현안 26-01

# 2026년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of Goyang City in 2026

• 전성훈, 김재형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

현안 26-01

# 2026년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of Goyang City in 2026

• 전성훈, 김재형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

# 2026년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of Goyang City in 2026

**연구책임자**

전성훈 고양연구원 행정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김재형 고양연구원 행정사회연구실, 연구원

# 정 책 제 안

## □ 공익성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 추가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민간위탁 유형이 '수익창출형'임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수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적용되어 왔으나, 위탁사무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가 요구됨

-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지표의 추가가 요구됨

## □ 성과평가 이력관리를 통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 이후 수탁업체의 변경이 없었던 점, 관련 전문서을 갖춘 경쟁업체가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별 이력관리를 통해 확인된 점수 하락 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됨

## □ 민간위탁 계약시 협약서에 성과목표와 평가체계 적시 필요

○ 현행 협약서에는 성과목표와 평가계획 수립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 성과목표와 평가항목 및 지표 등을 협의·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향후 재위탁 협약 시점에 성과목표와 세부 평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협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요 약

## 1. 연구 개요

### □ 연구 배경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고양특례시는 언급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해당 유통센터는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2023년 12월 종합유통센터 시설물을 분리(농협하나로유통,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제6조 제2항이 개정되었음
  - 더불어 같은조 제3항에는 위·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연구 필요성

- 현재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앞서 언급한 관련 조례의 개정 이후, 두 개의 수탁업체에 각기 다른 위탁기간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물 중 화훼동의 관리운영을 수행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임에 따라 2025년 5월 해당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음
  - 그리고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화훼동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수행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임
  - 이에 위탁자인 고양특례시는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해 「협약서」 제15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하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수탁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바, 이를 위한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제와 자치법규, 협약서 등을 확인하고, 위탁 시설물과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성과평가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 둘째, 민간위탁 유형이 수익창출형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을 기초로 평가항목을 채택하였고,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평가지표는 일반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적용하였음
  - 마지막으로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세부평가요소별로 확인하고, 성과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2. 연구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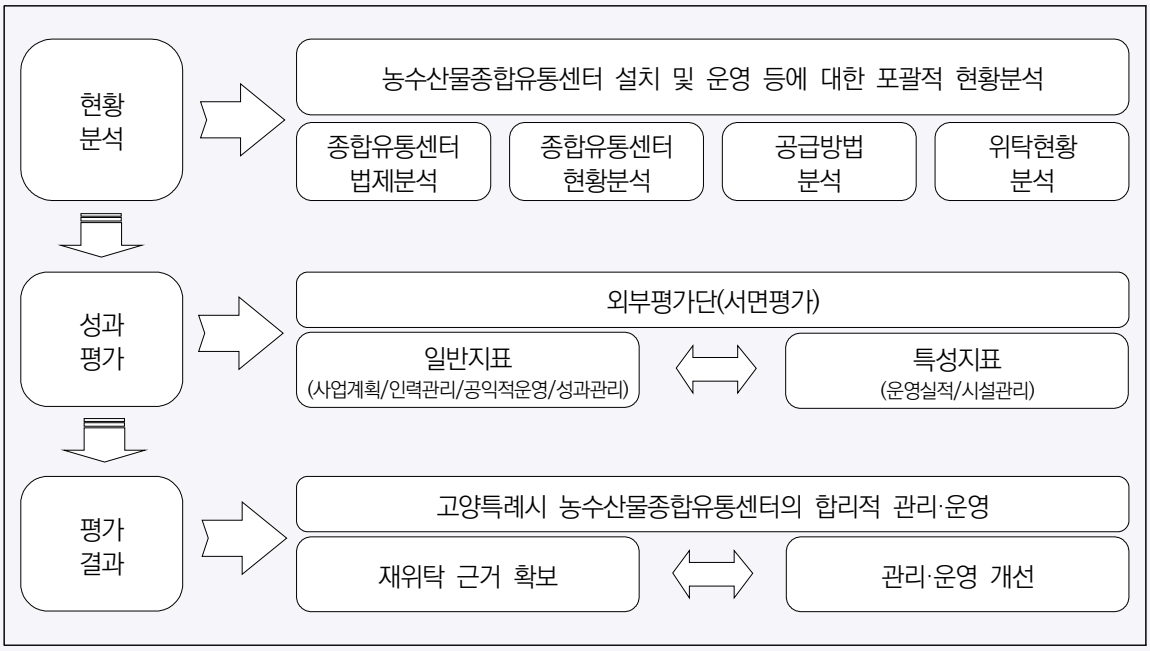

## 3. 성과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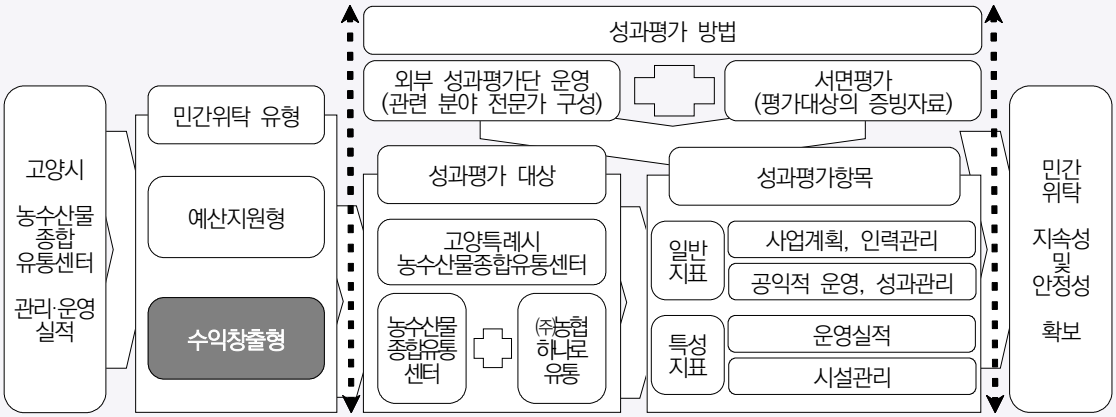


## 4. 개선방안

### □ 운영적 측면 개선방안

- 공익성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 성과평가 이력관리를 통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 제도적 측면 개선방안

- 민간위탁 계약시 협약서에 성과목표와 평가체계 적시 필요
-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 필요

# 목차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연구의 체계 9

**제2장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현황분석** 11

제1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법제 분석 13
제2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규정 체계 17
제3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현황분석 21

**제3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 성과평가** 27

제1절 성과평가 체계 29
제2절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49
제3절 평가결과 종합 65
제4절 평가이력 관리 69

**제4장 성과평가 개선방안** 73

**참고문헌** 77

**Abstract** 79

# 표 목차

표 1-1 |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제 ····· 3
표 1-2 |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 ····· 4
표 1-3 |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협약서 ····· 5
표 1-4 | 외부평가단 구성 현황 ····· 8
표 2-1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법제 ····· 13
표 2-2 | 종합유통센터 관련 법제 ····· 14
표 2-3 | 종합유통센터 관련 조례 및 협약 ····· 15
표 2-4 | 민간위탁 관련 법제 ····· 17
표 2-5 |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 18
표 2-6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규정 체계 ····· 19
표 2-7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요 연혁 ····· 21
표 2-8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개요 ····· 22
표 2-9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별 규모 ····· 22
표 2-10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훼동 위탁계약 연혁 ····· 23
표 2-11 | ㈜농협하나로유통의 인력 현황 ····· 24
표 2-12 | ㈜농협하나로유통의 2025년 사업실적 ····· 25
표 2-13 | ㈜농협하나로유통의 2025년 고객수 및 회원 현황 ····· 25
표 3-1 | 외부평가단 구성 현황 ····· 30
표 3-2 | 성과평가 세부 일정 ····· 30
표 3-3 | 성과평가 지표 ····· 31
표 3-4 | ㈜농협하나로유통의 성과평가 종합결과 ····· 65
표 3-5 |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영 개선방안 ····· 66
표 3-6 | 성과평가 일반현황 비교 ····· 69
표 3-7 | 평가지표 현황 비교 ····· 70
표 3-8 | 성과평가 결과 비교* ····· 71

# 그림 목차

그림 1-1 | 연구의 목적 ····· 6
그림 1-2 | 연구의 범위 ····· 7
그림 1-3 | 연구의 체계 ····· 9
그림 2-1 | ㈜농협하나로유통의 조직구조 ····· 24
그림 3-1 |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성과평가 체계 ····· 29

#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 제1장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유통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는 농림수협등이며, 같은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할 시에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1-1 |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제**

| 구 분 | | 주요 내용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9조 |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br>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br>② 〈생략〉<br>③ (중략)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br>④ (중략)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br>⑤ 〈생략〉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7조 |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br>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 구 분 | | 주요 내용 |
|---|---|---|
| | |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br>2 ~ 3. 〈생략〉<br>② (중략)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br>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중략)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6.06.02.

### □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

○ **고양특례시는 언급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해당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2023년 12월 종합유통센터 시설물을 분리(농협하나로유통,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제6조 제2항이 개정되었음
- 더불어 같은조 제3항에는 위·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2 |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

| 구 분 | | 주요 내용 |
|---|---|---|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6조 | 제6조(위탁)<br>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br>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8.7〉<br>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br>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br>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물 일부를 분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br>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검색일: 26.06.02.

○ **한편, 2024년 2월 5일 체결된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고양특례시는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위·수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진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같은조제3항에 근거하여 성과평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재위탁을 아니할 수 있음
- 더불어 제21조에는 협약서에 없는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표 1-3 |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협약서**

| 구 분 | | 주요 내용 |
|---|---|---|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제15조 | 제15조(성과평가)<br>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 사무의 서비스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br>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수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br>③ 제2항의 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제21조 | 제21조(해석)<br>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기타 관계법령 및 고양시 조례·규칙을 따른다.<br>② ~ ③ (생략) |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및 운영관리 개선 필요

○ **현재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앞서 언급한 관련 조례의 개정 이후, 두 개의 수탁업체에 각기 다른 위탁기간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물 중 화훼동의 관리운영을 수행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임에 따라 2025년 5월 해당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음
- 그리고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화훼동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수행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임
- 이에 위탁자인 고양특례시는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해 「협약서」 제15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목적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적정성 판단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하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수탁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바, 이를 위한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제와 자치법규, 협약서 등을 확인하고, 위탁 시설물과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성과평가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 둘째, 민간위탁 유형이 수익창출형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을 기초로 평가항목을 채택하였고,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평가지표는 일반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적용하였음
- 마지막으로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세부평가요소별로 확인하고, 성과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림 1-1 |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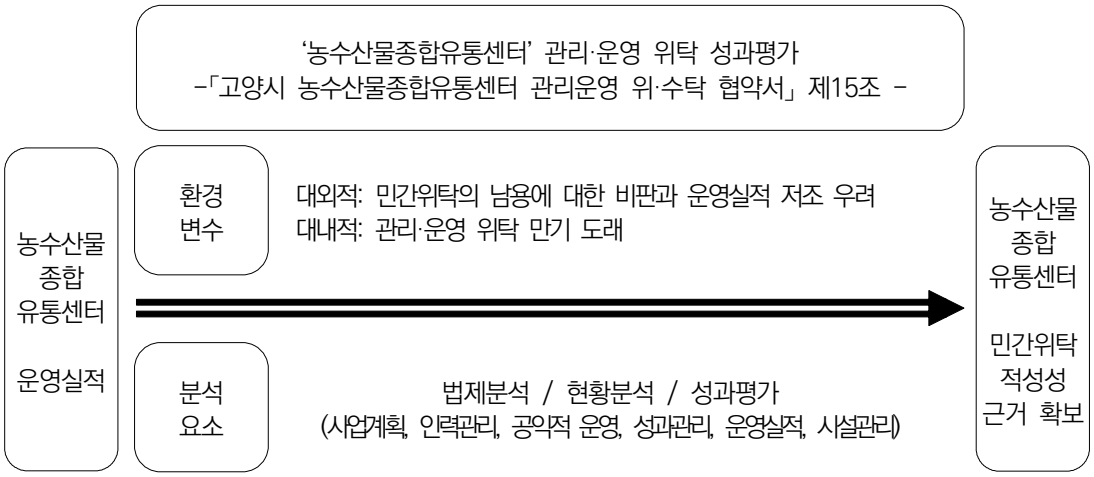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수탁기관인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한 성과평가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수탁기관인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함**

- 먼저, 공간적 범위는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 설정하되, 재계약 여부 판단 시점에 따라 목표시점은 2027년으로 설정함
- 다음으로 대상적 범위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상정함
- 마지막으로 내용적 범위는 종합유통센터에 대한 법제분석과 현황분석,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였음

**그림 1-2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대상적 범위] | [내용적 범위] |
|---|---|---|---|
| 고양특례시<br>(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기준년도: 2024년<br>목표년도: 2027년 | 수탁기관<br>((주)농협하나로유통) | 법제분석, 현황분석,<br>성과평가 |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2. 연구의 방법

### 1) 서면평가

□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기초한 서면평가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유형이 수익창출형이고, 위탁기간 동안의 실적평가임을 고려하여, 성과평가는 서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종합유통센터 관계법령과 고양특례시의 내부자료, 수탁기관인 ㈜농협하나로

유통에서 작성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기 설정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에 의거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 2) 외부평가단 구성 및 활용

○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세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경영능력, 사업성과 및 실적 등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음**

- 그리고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고양연구원의 소속 연구자는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음

**표 1-4 |** 외부평가단 구성 현황

| 구 분 | 소속 | 직위 | 성명 |
|---|---|---|---|
| 외부 평가위원 | 계명대학교 | 교수 | ○○○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위원 | ○○○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부연구위원 | ○○○ |
| | 시흥시정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
| | 성남시정연구원 | 명예연구위원 | ○○○ |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제3절 연구의 체계

○ 앞서 살펴본 성과평가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토대로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수행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종합유통센터 법제분석, 현황분석, 공급방법 분석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현황분석을 진행하였음
- 다음으로 성과평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탁기관((주)농협하나로유통)이 제공한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서면평가를 진행하였음
- 마지막으로 외부평가단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판단 근거를 확보하고, 관리·운영 차원에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음

**그림 1-3 | 연구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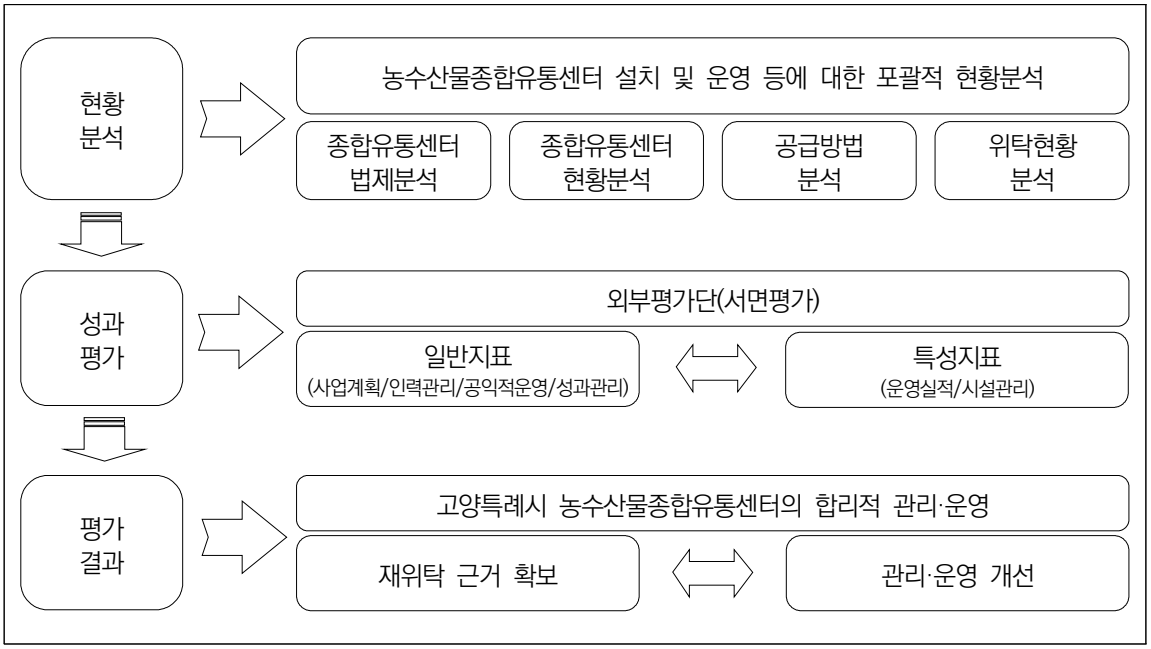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제2장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현황분석

제1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법제 분석
제2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규정 체계
제3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현황분석

# 제2장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현황분석

## 제1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법제 분석

### 1. 종합유통센터 법령 분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유통센터

○ 고양특례시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관련 법제는 크게 법령과 조례, 협약서로 구분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법령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는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고양특례시와 운영주체((주)농협하나로유통) 간에 체결한 협약서가 존재함

**표 2-1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법제**

| 구 분 | | 주요 내용 |
|---|---|---|
| 법령 | 법률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시행규칙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고양특례시 | 조례 |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 | 협약 |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물류활동에 필요한 종합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임

- 해당 시설은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에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권고 및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같은 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 더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을 받은 운영주체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유통자회사를 포함한 농림수협 등이며,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해야 하고,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표 2-2 | 종합유통센터 관련 법제**

| 구 분 | 조항 | 조명 | 조문 내용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11 〈생략〉<br>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 포장 · 가공 · 보관 · 수송 ·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br>13 ~ 14 〈생략〉 |
| | 제69조 |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br>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③ (중략)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br>④ ~ ⑤ 〈생략〉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7조 |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br>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br>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br>3. 〈생략〉<br>② (중략)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br>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 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중략)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6.06.02.

## 2. 종합유통센터 관련 조례 및 협약

□ 조례와 협약을 통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관리 및 운영

○ **고양특례시가 설치한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는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며, 같은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약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임**

- 그리고 같은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고양특례시장에게 거래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고양특례시장은 운영주체에 대해 서비스 개선 이행 권고 및 조치를 명할 수 있음(같은 조례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 **한편, 협약서는 위탁자인 고양특례시와 수탁자인 ㈜농협하나로유통의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협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고양특례시가 위탁하는 사무는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시설의 보수·유지 및 관리 등이며, 위탁시설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번지에 위치한 건물(50,136.63㎡) 7개 동이고, 위·수탁 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 총 3년임(같은 협약서 제3조)

**표 2-3 | 종합유통센터 관련 조례 및 협약**

<table>
<tr><th>구 분</th><th>조항</th><th>조명</th><th>조문 내용</th></tr>
<tr><td rowspan="4">「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td><td>제1조</td><td>목적</td><td>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td></tr>
<tr><td>제3조</td><td>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td><td>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 rowspan="2">명 칭</th><th rowspan="2">위 치</th><th colspan="2">면 적</th></tr>
<tr><th>대 지</th><th>건 물</th></tr>
<tr><td>고양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td><td>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td><td>119,269.3 제곱미터</td><td>58,952.72 제곱미터</td></tr>
</table></td></tr>
<tr><td>제27조</td><td>보고 및 검사 등</td><td>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②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td></tr>
<tr><td>제28조</td><td>감독 등</td><td>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특정사항을 정하여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br>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조항</th><th>조명</th><th>조문 내용</th></tr>
<tr><td></td><td></td><td></td><td>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br>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br>2. 구매· 판매 등에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br>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td></tr>
<tr><td rowspan="3">「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화훼동)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td><td>제1조</td><td>목적</td><td>이 협약은 “위탁자”가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td></tr>
<tr><td>제2조</td><td>위·수탁 사무</td><td>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사 무 명</th><th>사 무 의 내 용</th></tr>
<tr><td>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td><td>○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br>○ 종합유통센터시설의 보수·유지 및 관리<br>○ 기타 종합유통센터의 화훼동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br>※ 화훼동은 한국화훼농협이 관리·운영함</td></tr>
</table></td></tr>
<tr><td>제3조</td><td>위·수탁 기간</td><td>위·수탁 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 총 3년으로 한다.</td></tr>
</table>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검색일: 26.06.02.
고양시 내부자료

# 제2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규정 체계

## 1. 위탁 법령 체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은 각기 다른 법령 적용

○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기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별법령에 적시된 위탁 규정과 그에 따른 자치법규에 근거를 둠

**표 2-4 |** 민간위탁 관련 법제

| 구 분 | | 주요 내용 |
|---|---|---|
| 중앙 정부 | 법률 | ▪ 「정부조직법」 |
| | 시행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지방자치 단체 | 법률 | ▪ 「지방자치법」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개별 법령 | ▪ 개별법령에 적시된 위탁 규정 |
| | 자치법규 |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조례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6.06.02.

○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모두 법령에 따른 소관 사무 중 국민 및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등으로 민간위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더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표 2-5 |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 구 분 | 조항 | 조명 | 조문 내용 |
|---|---|---|---|
| 「정부조직법」 | 제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 ② 〈생략〉<br>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1조 | 민간위탁의 기준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br>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br>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br>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br>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br>② ~ ③ 〈생략〉 |
| 「지방자치법」 | 제117조 | 사무의 위임 등 | ① 〈생략〉<br>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br>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br>④ 〈생략〉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br>② ~ ⑧ 〈생략〉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6.06.02.

##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규정 체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위탁

○ 고양특례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공급방법과 관련된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그리고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서 찾을 수 있음

- 먼저, 고양특례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그리고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편, 고양특례시가 운영주체와 체결한 협약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위·수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가 60% 미만인 경우 재위탁을 아니할 수 있음**

- 더불어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표 2-6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규정 체계**

| 구 분 | 조항 | 조명 | 조문 내용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9조 |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br>② ~ ⑤ (생략) |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6조 | 위탁 |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br>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br>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br>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br>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물 일부를 분리 위탁할 수 있다.<br>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 제15조 | 성과평가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br>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수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br>③ 제2항의 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제21조 | 해석 |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기타 관계법령 |

| 구 분 | 조항 | 조명 | 조문 내용 |
|---|---|---|---|
| | | | 및 고양시 조례·규칙을 따른다.<br>② ~ ③ (생략) |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제16조 | 성과평가 |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br>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br>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6.06.02.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검색일: 26.06.02.
고양시 내부자료

# 제3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현황분석

## 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일반현황

### 1) 주요 연혁

□ 2001년 개장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

○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1년 2월 개장을 시작으로 2009년 식자재매장 증축,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 등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음

- 그리고 2001년 2월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 농수산물과 화훼류로 구분되어 각기 요구되는 전문성에 따라 상이한 수탁업체와 협약을 유지하여 왔음

**표 2-7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요 연혁**

| 구 분 | 주요 내용 |
|---|---|
| 1998.11.02 | ▪ 농림부 및 경기도의 사업계획 승인 |
| 2001.02.09 | ▪ 위·수탁 협약체결 |
| 2001.06.08 |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매, 소매, 식자재, Flower Mart) 개장 |
| 2009.06.10 | ▪ 식자재매장 증축 |
| 2009.09.01 | ▪ 농협주유소 개장 |
| 2011.09.20 | ▪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 |
| 2013.07.01 | ▪ 소매매장 리뉴얼 및 로컬푸드 전용관 설치 |
| 2018.05.23 | ▪ 주유소 리뉴얼 공사 |
| 2019.08.28 | ▪ 관내 생산 농산물 도매공급 개시 |
| 2021.04.03 | ▪ KFlower Mart 리뉴얼 개장 |
| 2021.05.28 | ▪ 온라인 디지털풀필먼트센터(DFC) 개장 |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 2) 주요 시설 현황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하1층 및 지상2층 규모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건축면적 46,751.18㎡에 연면적 58,952.72㎡ 규모임

- 주요 시설물로는 판매시설(집배송장, 학교급식지원세터 등)과 식자재매장동, 화훼동, 주유소, 세차장, 금융점포, 환경관리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8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개요

| 구 분 | 주요 내용 |
|---|---|
| 위치 |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 |
| 건축면적 | ▪ 46,751.18㎡ |
| 대지면적 | ▪ 119,269.3㎡ |
| 연면적 | ▪ 58,952.72㎡ |
| 층수 | ▪ 지하1층, 지상2층 |
| 주요 시설물 | ▪ 판매시설(집배송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자재매장동, 화훼동, 주유소, 세차장, 금융점포, 환경관리동 등 |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주요 시설별 규모를 살펴보면,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하나로마트가 13,303㎡로 가장 넓고, 화훼동이 9,476㎡의 규모임

**표 2-9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별 규모

(단위: ㎡, 평)

| 구분 | 대지 | 건물 | | | | | | |
|---|---|---|---|---|---|---|---|---|
| | | 하나로 마트 | 식자재 마트 | 급식 센터 | 주유소 | 집배송장 | 부대시설 | 화훼동 |
| 면적 | 119,269<br>(36,079) | 13,303<br>(4,024) | 2,763<br>(836) | 1,008<br>(305) | 780<br>(236) | 8,899<br>(2,692) | 23,366<br>(7,068) | 9,476<br>(2,866) |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 2. 위탁관리 운영주체 현황

### 1) 위탁계약 연혁

□ 2001년 개장부터 2026년 현재까지 위탁계약 유지

○ ㈜농협하나로유통은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한 200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계약과 재계약을 이어 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01년 5년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7회에 걸쳐 3년 계약을 이어 왔고, 위탁 시설물은 화훼동을 제외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동일함

**표 2-10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훼동 위탁계약 연혁

| 구 분 | 계약 기간 | 위탁 시설(화훼동 제외) |
|---|---|---|
| 2001.02.09. ~ 2006.02.08 | 5년 | 농수산물유통센터 |
| 2006.02.09. ~ 2009.02.08 | 3년 | 농수산물유통센터 |
| 2009.02.09. ~ 2012.02.08 | 3년 | 농수산물유통센터 |
| 2012.02.09. ~ 2015.02.08 | 3년 | 농수산물유통센터 |
| 2015.02.09. ~ 2018.02.08 | 3년 | 농수산물유통센터 |
| 2018.02.09. ~ 2021.02.08 | 3년 | 농수산물유통센터 |
| 2021.02.09. ~ 2024.02.08 | 3년 | 농수산물유통센터 |
| 2024.02.09. ~ 2027.02.08 | 3년 | 농수산물유통센터 |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 2) 조직 및 인력 현황

□ ㈜농협하나로유통의 조직은 4부 20팀으로 구성

○ 2026년 현재 ㈜농협하나로유통은 지사장과 부지사장을 필두로 사업지원부, 신선식품사업부, 가공생필사업부, 식자재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사업지원부에는 총무, 기획 등 8개 팀으로 구성되고, 신선식품사업부는 양곡, 농산, 축수산으로 구분되며, 가공생필사업부는 가공, 특산, 생필, 식자재사업부는 농축수산, 학교급식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 | ㈜농협하나로유통의 조직구조**

〈자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025년 사업계획, p1.

○ ㈜농협하나로유통의 인력구성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총 239명임

- 구체적으로 정규직은 총 34명이고, 무기계약직 50명, 영업지원직 15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1 | ㈜농협하나로유통의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영업지원직 | 합계 |
|---|---|---|---|---|
| 인원 | 34 | 50 | 155 | 239 |

〈자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025년 사업계획, p1.

## 3) 사업실적 현황

□ ㈜농협하나로유통의 2025년 실적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2,515억원

○ ㈜농협하나로유통의 2025년 실적을 사업별로 전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소매의 경우에는 2024년 대비 3.7%가 감소한 1,385억원이며, 식자재는 14.5% 감소하였고, 학교급식은 -0.4%, 주유소 -5.8%, 도매 -27.8% 등 전반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더불어 당기순이익은 2024년 대비 35.8%가 감소한 39억원으로 나타났음

**표 2-12 | ㈜농협하나로유통의 2025년 사업실적**

(단위: 억원, %)

| 구분 | | 2025년 실적 (12월 말 기준) | 전년동기 대비 | | |
|---|---|---|---|---|---|
| | | | 2024년 실적 (12월 말 기준) | 증감 (C=A-B) | 성장률 (C/B) |
| 사업량 | 소매 | 1,385 | 1,438 | △53 | △3.7 |
| | 식자재 | 574 | 671 | △97 | △14.5 |
| | 학교급식 | 360 | 361 | △1 | △0.4 |
| | 주유소 | 183 | 194 | △11 | △5.8 |
| | 도매 | 12 | 17 | △5 | △27.8 |
| | 합계 | 2,515 | 2,682 | △167 | △6.2 |
| 당기순이익 | | 39 | 61 | △22 | △35.8 |

〈자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025년 사업계획, p3.

## 4) 고객수 및 회원 현황

□ ㈜농협하나로유통의 2025년 총 고객수는 전년대비 7.4% 감소한 3,790,244명

○ ㈜농협하나로유통의 2025년 고객 및 회원 현황을 전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고객 수에서 소매의 경우 2024년 대비 4.0%가 감소한 2,761,425명이며, 식자재는 17.5% 감소하였고, 주유소 또한 8.2% 감소하였음
- 신규 회원수는 2024년 대비 12.4%가 감소하였고, 유실적회원수 또한 2.1%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2-13 | ㈜농협하나로유통의 2025년 고객수 및 회원 현황**

(단위: 명, %)

| 구분 | | 2025년 실적 (12월 말 기준) | 전년동기 대비 | | |
|---|---|---|---|---|---|
| | | | 2024년 실적 (12월 말 기준) | 증감 (C=A-B) | 성장률 (C/B) |
| 총 고객수 | | 3,970,244 | 4,289,234 | △318,990 | △7.4 |
| | 소매 | 2,761,425 | 2,877,395 | △115,970 | △4.0 |
| | 식자재 | 773,393 | 937,359 | △163,966 | △17.5 |

| | | | | | |
|---|---|---|---|---|---|
| | 주유소 | 435,426 | 474,480 | △39,054 | △8.2 |
| 신규 회원수 | | 17,571 | 20,060 | △2,489 | △12.4 |
| | 소매 | 17,405 | 19,871 | △2,466 | △12.4 |
| | 식자재 | 166 | 189 | △23 | △12.2 |
| 유실적회원수 | | 173,858 | 177,500 | △3,642 | △2.4 |
| | 소매 | 147,549 | 141,675 | △5,874 | △4.1 |
| | 식자재 | 26,309 | 35,825 | △9,516 | △26.6 |

〈자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025년 사업계획, p4.

# 제3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 성과평가

제1절 성과평가 체계
제2절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제3절 평가결과 종합
제4절 평가이력 관리

# 제3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 성과평가

## 제1절 성과평가 체계

### 1. 성과평가 수행체계

□ 민간위탁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포괄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공급방법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 확보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 제공에 있으며, 이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먼저, 민간위탁 유형은 수익창출형이며, 주요 평가대상은 ㈜농협하나로유통임
- 성과평가는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실효성, 객관성 등을 위해 외부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평가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적용하였음
-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세부평가요소는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하되, 고양특례시 관리부서와 수탁업체의 의견을 조율하여 17개 세부평가요소를 채택하였고, 일반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음

**그림 3-1 |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성과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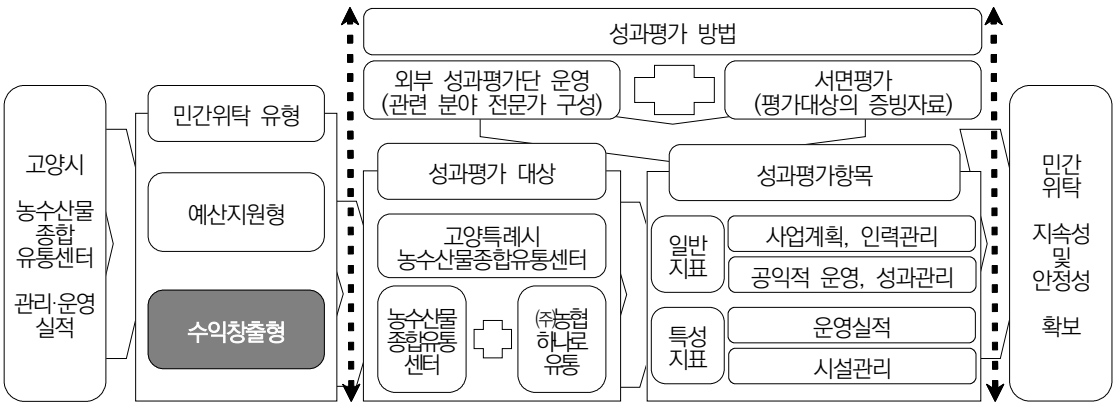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성과평가의 투명성과 평가결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단 구성

○ 외부평가단은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결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구체적으로 국책연구원과 기초자치단체 연구원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관련 성과평가 경험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표 3-1 | 외부평가단 구성 현황**

| 구분 | 소속 | 직위 | 전공분야 | 성명 |
|---|---|---|---|---|
| 외부 평가단 | 계명대학교 | 교수 | 행정학 | ○○○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위원 | 행정학 | ○○○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부연구위원 | 행정학 | ○○○ |
| | 시흥시정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행정학 | ○○○ |
| | 성남시정연구원 | 초빙연구위원 | 행정학 | ○○○ |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2026년 4월 평가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성과평가 진행

○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2026년 4월 평가계획의 수립과 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음

- 이후 성과평가 증빙자료 취합과 평가, 평가결과 종합, 재평가 요구 접수 및 재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음

**표 3-2 | 성과평가 세부 일정**

| 구 분 | 주요 내용 |
|---|---|
| 26.04 ~ 26.05 | ▪ 평가계획 수립<br>▪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지표 매뉴얼 개발 |
| 26.05 ~ 26.06 | ▪ 성과평가 증빙자료 취합<br>▪ 성과평가 진행 |
| 26.06 ~ 26.07 | ▪ 1차 평가결과 종합 및 송부<br>▪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 접수 및 재평가 진행 |
| 26.07 ~ 26.07 | ▪ 재평가 완료 및 성과평가 결과 확정 |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2. 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 1) 평가지표 구성 체계

□ 일반지표(50)와 특성지표(50)를 통한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기초하여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였음

- 구체적으로 일반지표는 평가항목으로 '사업계획(10)', '인력관리(15)', '공익적 운영(15)', '성과관리(10)'를 채택하고, 그에 따른 9개 세부 평가지표로 설정하였음
- 그리고 특성지표는 '운영실적(30)'과 '시설관리(20)'를 평가항목으로 상정하고, 8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음

**표 3-3 |** 성과평가 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측정 | 평가내용 |
|---|---|---|---|---|---|
| 일반지표(50) | 1. 사업계획(10)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10 | 정성 | ▪ 사업목적 명확성 및 사업내용 적정성<br>▪ 추진방식 합리적 계획여부 |
| | 2. 인력관리(15)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3 | 정량 | ▪ 인력배정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5 | 정량 | ▪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 |
| | | 2.3. 근태관리 | 7 | 정량 | ▪ 근태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 | 3. 공익적 운영(15) | 3.1. 환원사업 실시 | 5 | 정량 | ▪ 환원사업 기여도 |
| | | 3.2. 지역주민 고용 | 3 | 정량 | ▪ 고용인원 대비 고양시민 인원 |
| | | 3.3. 지역업체 선정 | 3 | 정성 | ▪ 지역업체 우선 선정 |
| | | 3.4. 가격안정기여도 | 4 | 정성 | ▪ 출하경로 다양화 및 물가안정 기여 |
| | 4. 성과관리(10) | 4.1. 성과관리체계 | 10 | 정성 | ▪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및 환류 |
| 특성지표(50) | 5. 운영실적(30) | 5.1. 유통센터 매출액 | 5 | 정량 | ▪ 유통센터 매출 실적 |
|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8 | 정량 | ▪ 매출액 대비 농산물 매출액 비중 및 도매사업 비중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5 | 정량 | ▪ 전체 농산물 대비 관내 농산물 취급 비율 |
| | | 5.4. 품질 관리 실적 | 7 | 정량 | ▪ 전문 인력 배치, 검사 실적관리 건수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5 | 정량 | ▪ 이용료 납부 여부 |
| | 6. 시설관리(20)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10 | 정량 | ▪ 시설물 의무 점검 이행 여부 및 의무 안전관리 교육 이행 여부 |
| | | 6.2. 유지보수 실적 | 5 | 정량 | ▪ 시설물 유지보수 건수 및 소요액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5 | 정성 | ▪ 안전사고 및 민원 관리 적정성 |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2) 성과평가 지표 정의서

| 평가 항목 | 1. 사업계획 | 평가 지표 | 1.1. 사업계획의 구체성 | 세부 배점 | 10.0 |
|---|---|---|---|---|---|

| 평가 내용 | □ 사업목적 명확성 및 사업내용 적정성<br>□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식의 적절성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1~4번 항목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 배점 | 0~2 | 3~4 | 5~6 | 7~9 | 1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② 사업목적과 세부사업 목표 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경우

③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④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검토해 볼 때,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된 경우

■ 점수부여 방법

| 판단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 사업목적의 명확성 | ○ | 3개 | 2개 | 1개 | 0개 |
| 2. 사업목적과 연계성 | ○ | | | | |
| 3. 사업내용의 적정성 | ○ | | | | |
| 4. 추진방식의 합리성 | ○ | | | | |

**평가 근거 자료**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확인자료(사업계획서)

■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운영계획서)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분석 자료 등

| 평가 항목 | 2. 인력관리 | 평가 지표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세부 배점 | 3.0 |
|---|---|---|---|---|---|

| 평가 내용 | □ 민간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배정 및 업무분장은 적절한가?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1~3번 항목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 배점 | 1.0 | 1.5 | 2.0 | 2.5 | 3.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이 적절히 편재되어 있는 경우

②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인력이 충분한 경우

③ 민간위탁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 점수부여 방법

| 판단기준 | 평가점수 판정 기준 | | | | |
|---|---|---|---|---|---|
| | 매우 우수 우수※ | 보통 | | 미흡 | 매우 미흡 |
| | | 판정1 | 판정2 | | |
| 1. 조직편재의 적절성 | ○ | ○ | ○ | 1개 | 0개 |
| 2. 인력의 충분성 | ○ | ○ | | | |
| 3. 업무분장의 합리성 | ○ | | ○ | | |

※ 판단기준에 따른 모든 요인이 존재하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

**평가 근거 자료**

■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

■ 조직별·인력별 사무분장 또는 업무분장표

| 평가 항목 | 2. 인력관리 | 평가 지표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세부 배점 | 5.0 |
|---|---|---|---|---|---|

| 평가 내용 | □ 해당 사무의 시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배점 | 1.0 | 2.0 | 3.0 | 4.0 | 5.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민간위탁사무의 시행을 위해 배치된 인력들의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자격증, 전문지식,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 유통센터 근무자(사무분장 기준) : a(명)

㉡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민간위탁 관련 사무 2년 이상 근무자 : b(명)

㉢ 비율 = b/a × 100

■ 측정산식

| ㉠ 유통센터 근무자(a) | ㉡ 자격증 소지자 등(b) | ㉢ 비율(b/a) |
|---|---|---|
| | | % |

**평가 근거 자료**

■ 사무분장 또는 업무분장표

■ 사무담당인력의 자격증 및 직무경력 자료

| 평가 항목 | 2. 인력관리 | 평가 지표 | 2.3. 근태관리 | 세부 배점 | 7.0 |
|---|---|---|---|---|---|

| 평가 내용 | □ 근태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이 잘 되었는가?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2건 이하 | 3건 | 4건 | 5건 | 6건 |
|---|---|---|---|---|---|
| 배점 | 0.0 | 1.0 | 3.0 | 5.0 | 7.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아래의 측정항목별 이행 여부를 볼 때 근태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 측정항목

→ 이행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하고, 이행 건수 합계로 판단

| 구분 | 측정항목 | 이행 | 미이행 |
|---|---|---|---|
| ① | 직원 근무상황부 기록관리 여부<br>(지각, 조퇴, 외출, 연가, 병가, 휴가 등) | | |
| ② | 직원 출장명령 및 복명 여부 | | |
| ③ | 시간외 근무명령 여부 | | |
| ④ | 직원 휴가기준 및 적용 여부 | | |
| ⑤ | 직원 사무분장 여부 | | |
| ⑥ | 내부결재체계 운영 여부 | | |
| 합계 | | | |

**평가 근거 자료**

■ 측정항목별 증빙 서류
(복무규정 및 근태 관리 시스템 확인 자료)

| 평가 항목 | 3. 공익적운영 | 평가 지표 | 3.1. 환원사업 실시 | 세부 배점 | 5.0 |
|---|---|---|---|---|---|

| 평가 내용 | □ 지역환원사업의 기여도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30% 미만 | 30% 이상 |
|---|---|---|
| 배점 | 0.0 | 5.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환원사업 평균 투입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 측정산식

| ①연차 | | ②당기순이익(A) | | ③환원적립금 발생액(B) | | ④(B/A) |
|---|---|---|---|---|---|---|
| 1년차 | 25년 | 24년 | (원) | 25년 적립 | (원) | (%) |
| 2년차 | 26년 | 25년 | (원) | 26년 적립 | (원) | (%) |
| | | | | | ④의 평균 | (%)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8조(지역사회 발전기여)
② "수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위탁관리·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당해 연도 매출액의 0.3%와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직전 위·수탁기간 연차별 적립금 평균액의 115%를 상한액으로 한다.)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고양시 공익목적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평가 근거 자료**

■ 협약서
■ 환원사업 계획 및 결산보고서

| 평가 항목 | 3. 공익적운영 | 평가 지표 | 3.2. 지역주민 고용 | 세부 배점 | 3.0 |
|---|---|---|---|---|---|

| 평가 내용 | □ 고용인원 대비 고양시민 인원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협약조건 90%이상 도달시 점수 부여

| 구분 | 60% 미만 | 60% 이상 75% 미만 | 75%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 배점 | 0.0 | 1.0 | 2.0 | 3.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유통센터 관리·운영 사무인력 중 90% 이상을 고양시민으로 고용하였는가?

■ 측정산식

| ①연차 | | ②유통센터 근무자(A) (정규직 제외) | ③고양시민인 자(B) | ④고용율 (B/A) |
|---|---|---|---|---|
| 1년차 | 2024년 | (명) | (명) | (%) |
| 2년차 | 2025년 | (명) | (명) | (%) |
| | | | ④의 평균값 | % |

**평가 근거 자료**

■ 협약서

■ 관리운영 주체 직원 현황

| 평가 항목 | 3. 공익적운영 | 평가 지표 | 3.3. 지역업체 선정 | 세부 배점 | 3.0 |
|---|---|---|---|---|---|

| | |
|---|---|
| 평가 내용 | □ 지역업체 우선 선정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미흡 | 보통 | 우수 |
|---|---|---|---|
| 배점 | 1.0 | 2.0 | 3.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이용업체 선정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업체를 우선하였는가?

**평가 근거 자료**

■ 협약서

■ 지역업체 선정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평가 항목 | 3. 공익적운영 | 평가 지표 | 3.4. 가격안전기여도 | 세부 배점 | 4.0 |
|---|---|---|---|---|---|

| | |
|---|---|
| 평가 내용 | □ 출하경로 다양화 및 물가안정 기여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 배점 | 1.0 | 2.0 | 3.0 | 4.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농수산물유통센터로 물가안정을 위한 역할수행이 잘되고 있는가?

(농산물 기획행사 및 산지직판 행사 등)

| | |
|---|---|
| 평가 근거 자료 | ■ 할인행사 등에 대한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 |

| 평가 항목 | 4. 성과관리 | 평가 지표 | 4.1. 성과관리체계 | 세부 배점 | 10.0 |
|---|---|---|---|---|---|

| 평가 내용 |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점검, 환류)가 적절한가?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 배점 | 2.0 | 4.0 | 6.0 | 8.0 | 10.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자체적인 성과 개선 및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여부

② 사업의 효과적 수행 및 사업목적 달성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여부

- 적절 (○)
  *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제시한 경우
- 일부 적절(△)
  *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제시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경우

③ 내부 평가결과의 사업구조개선에 환류 여부

- 적절 (○)
  * 내부 평가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방식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실적이 있는 경우
- 일부 적절(△)
  * 내부 평가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방식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실적이 존재하나, 일부 부족한 경우

■ 점수부여 방법

| 구분 | 계획 수립 | 자체평가 | 평가결과 환류 |
|---|---|---|---|
| 매우 우수 | ○ | ○ | ○ |
| 우수 | ○ | △ | △ |
| 보통 | △ | △ | △ |
| 미흡 | △ | △ | × |
| 매우 미흡 | 이하 매우 미흡 | | |

**평가 근거 자료**

■ 성과개선 및 운영활성화 계획서, 실적보고서

■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증빙 자료

| 평가 항목 | 5. 운영실적 | 평가 지표 | 5.1. 유통센터 매출액 | 세부 배점 | 5.0 |
|---|---|---|---|---|---|

| 평가 내용 | □ 유통센터 매출액 실적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2,000억 미만 | 2,000억 이상 2,200억 미만 | 2,200억 이상 2,400억 미만 | 2,400억 이상 2,600억 미만 | 2,600억 이상 |
|---|---|---|---|---|---|
| 배점 | 1.0 | 2.0 | 3.0 | 4.0 | 5.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매출액 실적은 얼마인가?

- 평가기준 :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전체 매출액 누적

■ 측정산식

| 구 분 | | 매출액 |
|---|---|---|
| 1년차 | 2024년 | (원) |
| 2년차 | 2025년 | (원) |
| 매출액 합계 | | (원) |

**평가 근거 자료**

■ 유통센터 연도별 거래실적

| 평가 항목 | 5. 운영실적 | 평가 지표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세부 배점 | 8.0 |
|---|---|---|---|---|---|

| 평가 내용 | □ 유통센터 매출액 대비 농산물 매출액 비중 및 도매사업 비중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① 농산물 취급 비율 | 50% 미만 | 50% 이상 51% 미만 | 51% 이상 |
|---|---|---|---|
| 배점 | 1.0 | 2.0 | 4.0 |

| ② 도매사업 비중 |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
|---|---|---|---|
| 배점 | 0.0 | 2.0 | 4.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위탁기간 내 농산물 취급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4점)

- 평가기준 :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매출액 대비 농산물 매출액 비율 평균

■ 측정산식

| ①연차 | | ②매출액 (A) | ③농산물 매출액(B) | ④농산물 취급 비율(B/A) |
|---|---|---|---|---|
| 1년차 | 2024년 | (원) | (원) | (%) |
| 2년차 | 2025년 | (원) | (원) | (%) |
| 농산물 취급 비율 평균값 | | | | (%) |

② 위탁기간 내 도매사업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4점)

- 평가기준 :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매출액 대비 농산물 도매 매출액 비율 평균

■ 측정산식

| ①연차 | | ②매출액 (A) | ③도매 농산물 매출액(B) | ④도매 농산물 취급 비율(B/A) |
|---|---|---|---|---|
| 1년차 | 2024년 | (원) | (원) | (%) |
| 2년차 | 2025년 | (원) | (원) | (%) |
| 농산물 취급 비율 평균값 | | | | (%) |

**평가 근거 자료**

■ 유통센터 연도별 거래실적

| 평가 항목 | 5. 운영실적 | 평가 지표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세부 배점 | 5.0 |
|---|---|---|---|---|---|

| 평가 내용 | □ 전체 농산물 대비 관내 농산물 취급 비율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
|---|---|---|---|
| 배점 | 2.0 | 4.0 | 5.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위탁기간 내 관내 농산물 매출 확대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관내 농산물 매출액 증가율
(전년대비 연간단위 매출액 증가율 확인을 위해 25년은 제외)

■ 측정산식

| ①연차 | - | 1년차 | 2년차 | 증가율 평균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②관내 농산물 매출액 | | | | - |
| ③증가율 | - | | | |

※ 증가율 산식: 현재년도 관내농산물 매출액/전년도 관내농산물매출액 ×100

**평가 근거 자료**

■ 유통센터 연도별 거래실적(관내 농산물 취급)

| 평가 항목 | 5. 운영실적 | 평가 지표 | 5.4. 품질 관리 실적 | 세부 배점 | 7.0 |
|---|---|---|---|---|---|

| 평가 내용 | □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① (3.0) |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배점 | 1.0 | 1.5 | 2.0 | 2.5 | 3.0 |

| ② (2.0) | 900건 미만 | 900건 이상 1,000건 미만 | 1,000건 이상 2,000건 미만 | 2,000건 이상 3,000건 미만 | 3,000건 이상 |
|---|---|---|---|---|---|
| 배점 | 0.0 | 0.5 | 1.0 | 1.5 | 2.0 |

| ③ (2.0) | 검사장비 보유 | | 품질관리시설 보유 | |
|---|---|---|---|---|
| | 보유 | 미보유 | 보유 | 미보유 |
| 배점 | 1.0 | 0.0 | 1.0 | 0.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및 측정산식

① 안전성등급 검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에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였는가?

㉠ 품질관리 부서 근무자(사무분장 기준) : a(명)

㉡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검사업무 2년 이상 근무자 : b(명)

㉢ 비율 = b/a × 100

| ①품질관리부서 근무자(A) | ②자격증소지자 등(B) | ③비율(B/A) |
|---|---|---|
| | | % |

② 품질 관리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 평가기준 : 연간 안전성 검사 건수 평균

| ①연차 | | ②연간 안전성 검사 건수 |
|---|---|---|
| 1년차 | 2024년 | (%) |
| 2년차 | 2025년 | (%) |
| 연간 안전성 검사 건수 평균 | | (%) |

③ 품질 관리 시설운영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평가기준 : 안전성 검사 등 장비 보유 및 품질 관리 시설 보유 여부

| 측정항목 | 보유 | 미보유 |
|---|---|---|
| 안전성 검사 등 장비 보유 | | |
| 품질 관리 시설 보유 | | |
| 점수 합계 | | |

**평가 근거 자료**

■ 검사인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 검사실적 내역, 반품비율 증빙자료

■ 검사장비 내역, 품질관리시설 내역

| 평가 항목 | 5. 운영실적 | 평가 지표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세부 배점 | 5.0 |
|---|---|---|---|---|---|

| 평가 내용 | □ 매출액의 0.5%로 이용료를 납부하였는가?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21일 초과 | 15 ~ 21일 | 8 ~ 14일 | 1 ~ 7일 | 0일 |
|---|---|---|---|---|---|
| 배점 | 1.0 | 2.0 | 3.0 | 4.0 | 5.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① 이용료 납부가 잘 되고 있는가?

■ 측정산식

| ①연차 | | ②이용료 고지액(A) | ③이용료 납부액(B) | ④납부지연일수 |
|---|---|---|---|---|
| 1년차 | 2024년 | (원) | (원) | (일) |
| 2년차 | 2025년 | (원) | (원) | (일) |
| 납부지연일수의 합계 | | | | 일 |

**평가 근거 자료**

■ 협약서

■ 이용료 납부 자료

| 평가 항목 | 6. 시설관리 | 평가 지표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세부 배점 | 10.0 |
|---|---|---|---|---|---|

**평가 내용**

□ 법정의무시설점검을 이행하였는가?
□ 법정의무안전교육을 이행하였는가?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① |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
|---|---|---|---|---|---|
| 배점 | 1.0 | 2.0 | 3.0 | 4.0 | 5.0 |

| ② |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
|---|---|---|---|---|---|
| 배점 | 1.0 | 2.0 | 3.0 | 4.0 | 5.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및 측정산식

① 시설물 의무적 법정 점검* 준수율은 어느 정도인가?

- 평가기준: 법정 점검 준수율 (점검 이행건수/점검 필요 건수)x100

  * 소방설비 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비점오염 점검,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방역관리,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등

| ①연차 | | ②점검필요건수(A) | ③점검이행건수(B) | ④법정점검준수율 |
|---|---|---|---|---|
| 1년차 | 2024년 | (건) | (건) | (%) |
| 2년차 | 2025년 | (건) | (건) | (%) |
| 법정점검준수율 평균 | | | | (%) |

② 법정 의무 안전관리 교육 이행 준수율은 어느 정도인가?

- 평가기준: 법정 의무교육 준수율 (교육 이행건수/의무교육 건수)x100

  * 산업안전보건 교육, 소방안전관리자(보조원) 교육, 전기안전관리자(보조원)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등

| ①연차 | | ②의무교육건수(A) | ③교육이행건수(B) | ④법정의무교육준수율 |
|---|---|---|---|---|
| 1년차 | 2024년 | (건) | (건) | (%) |
| 2년차 | 2025년 | (건) | (건) | (%) |
| 법정의무교육준수율 평균 | | | | (%) |

**평가 근거 자료**

■ 법정 검사 자료, 안전관리 및 교육 자료 등

| 평가 항목 | 6. 시설관리 | 평가 지표 | 6.2. 유지보수 실적 | 세부 배점 | 5.0 |
|---|---|---|---|---|---|

| 평가 내용 | □ 적정한 시설 유지 보수로 유통센터 활성화와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는가?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배점 | 1.0 | 2.0 | 3.0 |

| 구분 | 1억 미만 | 1억 이상 | 10억 이상 |
|---|---|---|---|
| 배점 | 0.0 | 1.0 | 2.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및 측정산식

①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시설 유지보수는 계획 대비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 평가기준(건수) : 시설 유지보수 (실적 건수/ 계획 건수)x100

| ①연차 | | ②계획건수(A) | ③실적건수(B) | ④(B/A) |
|---|---|---|---|---|
| 1년차 | 2024년 | (원) | (원) | (%) |
| 2년차 | 2025년 | (원) | (원) | (%) |
| ④의 평균값 | | | | % |

- 평가기준(금액) : 금액에 따라 배점부여

| ①연차 | | ②보수집행금액 |
|---|---|---|
| 1년차 | 2024년 | (원) |
| 2년차 | 2025년 | (원) |
| ②의 평균값 | | |

| 평가 근거 자료 | ■ 시설 유지보수 계획서, 유지보수 완료 보고서(금액확인 필) |
|---|---|

| 평가 항목 | 6. 시설관리 | 평가 지표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세부 배점 | 5.0 |
|---|---|---|---|---|---|

| 평가 내용 | □ 안전사고 및 민원에 대해 적극 관리하였는가? |
|---|---|

**측정 방법**

■ 점수 부여: 측정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 배점 | 1.0 | 2.0 | 3.0 | 4.0 | 5.0 |

**측정 기준**

■ 판단 기준 및 측정산식

① 유통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및 민원 발생 시 적극 관리·대응 하였는가?

| 평가 근거 자료 | ■ 보험가입증명, 민원처리부 |
|---|---|

# 제2절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1. 성과평가 결과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훼동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된 평가항목과 그에 따른 성과지표 및 산식 등을 반영하고, 세부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 일반 및 특성 지표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A, B, C, D, E)의 결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 1) 외부평가위원 A

(1) 평가지표별 점수표

| 구분 |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 평가 방식 | 세부 배점 | 점수 (평가위원) |
|---|---|---|---|---|---|
| 일반 지표 (50) | 1. 사업계획(10)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정성 | 10 | 6 |
| | 2. 인력관리(15)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정량 | 3 | 2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정량 | 5 | 4 |
| | | 2-3. 근태관리 | 정량 | 7 | 7 |
| | 3. 공익적 운영(15) | 3-1. 환원사업 실시 | 정량 | 5 | 5 |
| | | 3-2. 지역주민 고용 | 정량 | 3 | 1 |
| | | 3-3. 지역업체 선정 | 정성 | 3 | 3 |
| | | 3-4. 가격안정 기여도 | 정성 | 4 | 4 |
| | 4. 성과관리(10) | 4-1. 성과관리체계 | 정성 | 10 | 6 |
| 특성 지표 (50) | 5. 운영실적(30) | 5-1. 유통센터 매출액 | 정량 | 5 | 5 |
|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정량 | 8 | 4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정량 | 5 | 5 |
| | | 5-4. 품질관리 실적 | 정량 | 7 | 6.5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정량 | 5 | 5 |
| | 6. 시설관리(20)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정량 | 10 | 10 |
| | | 6-2. 유지보수 실적 | 정량 | 5 | 5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정성 | 5 | 5 |
| 합계 | | | | | 83.5 |

## (2) 평가항목별 의견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일반 지표 | 1. 사업계획 | 우수한 점 | ▪ 4개 중점 추진계획별 세부단위 사업 간의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 | | 미흡한 점 | ▪ 기관의 사업 및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대상 요구조사 및 의견수렴 등의 사전 절차가 요구됨<br>▪ 기관의 추진목표에서 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전략/비전 등이 보다 직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명확성 제고가 요구됨 |
| | 2. 인력관리 | 우수한 점 | ▪ 유통센터 전체 근무자 중, 약 80%에 가까운 직원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인력의 전문성 수준이 양호하다고 판단됨 |
| | | 미흡한 점 | ▪ 차기년도 실적보고서에는 직원 혹은 팀 단위 업무(사무) 분장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기를 권고함 |
| | 3. 공익적 운영 | 우수한 점 | ▪ 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한 실적이 양호함<br>▪ 다양한 그리고 상시적 수준의 통합판촉행사를 개최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 | | 미흡한 점 | ▪ 기관 인력운영 및 관리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지역주민 고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2024년에 비해 2025년도에는 지역주민 고용율이 하락함) |
| | 4. 성과관리 | 우수한 점 | ▪ 연 단위 2회(설, 추석) 특판 팀별 판매실적 평가를 통해 이에 상응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 | | 미흡한 점 | ▪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기 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을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환류 체계 수립이 요구됨 |
| 특성 지표 | 5. 운영실적 | 우수한 점 | ▪ 2개년도 평가 기간 동안의 유통센터 매출액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임 |
| | | 미흡한 점 | ▪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매출액 대비 농산물 도매 매출액 비율 평균이 22.7%으로 기준 대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 6. 시설관리 | 우수한 점 | ▪ 법정의무시설점검 및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 실적과, 적정한 수준의 유지보수 실적이 확인됨 |
| | | 미흡한 점 | ▪ 별도 의견 없음 |

## 2) 외부평가위원 B

### (1) 평가지표별 점수표

| 구분 |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 평가 방식 | 세부 배점 | 점수 (평가위원) |
|---|---|---|---|---|---|
| 일반 지표 (50) | 1. 사업계획(10)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정성 | 10 | 10 |
| | 2. 인력관리(15)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정량 | 3 | 3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정량 | 5 | 4 |
| | | 2-3. 근태관리 | 정량 | 7 | 7 |
| | 3. 공익적 운영(15) | 3-1. 환원사업 실시 | 정량 | 5 | 5 |
| | | 3-2. 지역주민 고용 | 정량 | 3 | 1 |
| | | 3-3. 지역업체 선정 | 정성 | 3 | 3 |
| | | 3-4. 가격안정 기여도 | 정성 | 4 | 4 |
| | 4. 성과관리(10) | 4-1. 성과관리체계 | 정성 | 10 | 6 |
| 특성 지표 (50) | 5. 운영실적(30) | 5-1. 유통센터 매출액 | 정량 | 5 | 5 |
|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정량 | 8 | 4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정량 | 5 | 5 |
| | | 5-4. 품질관리 실적 | 정량 | 7 | 6.5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정량 | 5 | 5 |
| | 6. 시설관리(20)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정량 | 10 | 10 |
| | | 6-2. 유지보수 실적 | 정량 | 5 | 5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정성 | 5 | 3 |
| 합계 | | | | | 86.5 |

### (2) 평가항목별 의견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일반 지표 | 1. 사업계획 | 우수한 점 | ▪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구현이라는 사업목적과 목표, 비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 실행과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br>▪ 고객 중심 경영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유통·소비·문화가 연계된 복합형 유통센터 구축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br>▪ 특히, 고양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유통센터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지역 상생과 공공성 강화 노력이 반영되어 있음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 | ▪ 연차별 사업계획과 세부 추진과제가 연계되어 있어 중장기 추진체계의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음 |
| | | 미흡한 점 | ▪ 없음 |
| | 2. 인력관리 | 우수한 점 | ▪ 사업지원팀, 신선식품사업팀, 가공생필사업팀 등 조직편제와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 특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음<br>▪ 각 팀별로 업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되며, 사업지원 기능과 사업운영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br>▪ 또한 신선식품과 가공생필 분야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 특성에 맞는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br>▪ 전반적으로 조직 간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면서도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 | | 미흡한 점 | ▪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7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전문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련 자격증 보유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함<br>▪ 기존 전문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인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실무경험 축적이 가능하도록 전문분야 중심의 경력관리 지원이 필요함<br>▪ 직무 관련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조직 차원에서 전문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안정적으로 축적·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운영 및 역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3. 공익적 운영 | 우수한 점 | ▪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환원사업의 평균 투입비중은 30%로 나타나, 지역사회 환원과 공공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됨<br>▪ 특히, 지역사회 지원과 공익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 중심 운영을 넘어, 지역상생과 시민편익 확대를 고려한 운영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br>▪ 총 25차례에 걸친 통합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고양시 지역경제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확인됨<br>▪ 또한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생산품 연계 등 지역경제와의 상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공공성과 시장 기능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공익적인 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 | | 미흡한 점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고양시민 고용율은 66.1%로 나타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해당 평가에 대한 성과달성을 위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br>▪ 물론, 최근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고용 확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단계적인 채용 확대와 지역인재 활용 방안 등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마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 | 련될 필요가 있음<br>▪ 더불어, 청년층 및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직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고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4. 성과관리 | 우수한 점 | ▪ 매년 2회에 걸쳐 특판 팀별 특별추진 점검·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업운영의 체계성과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br>▪ 특히, 팀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성과달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의 책임성과 조직 내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됨 |
| | | 미흡한 점 | ▪ 평가결과 활용이 보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결과가 실제 운영 개선이나 조직성과 향상에 어떻게 환류되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br>▪ 이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동시에, 문제점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 보완, 조직운영 효율화 등 실질적인 개선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br>▪ 또한 현재 성과관리가 매출액 등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만족도, 공공성, 운영 효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운영적인 측면을 반영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됨<br>▪ 더불어, 전년 대비 성장률 감소와 관련하여 실적 비교에 그치지 않고,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소비환경 변화,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원인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br>▪ 이를 바탕으로 성과 저하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 운영과 경영전략 수립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특성 지표 | 5. 운영실적 | 우수한 점 | ▪ 위탁기간 내 유통센터 전체 매출액(누적)은 2,6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음<br>▪ 특히, 경기침체와 소비환경 변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규모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br>▪ 특히,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공익적 경영을 병행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 효율성과 사업 지속가능성이 인정됨<br>▪ 이러한 성과 달성은 유통센터의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운영 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음 |
| | | 미흡한 점 | ▪ 다만,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인 운영 개선 노력이 필요함<br>▪ 특히, 소비환경 변화와 유통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요구됨<br>▪ 또한 유통센터 매출액 대비 농산물 매출액 비중(60.2%), 전체 농산물 대비 관내 농산물 취급 비율(2.3%) 등은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도매사업 비중은 22.7%에 그쳐 측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 | 6. 시설관리 | 우수한 점 | ▪ 법정의무시설점검, 법정의무안전교육을 100% 이행하는 등 시설안전관리와 운영상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충실히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 | 수행하고 있음<br>▪ 또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환경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br>▪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정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 | | 미흡한 점 | ▪ 다만, 유통센터의 사고관리 대응이 현재 보험가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대응을 위한 자체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br>▪ 특히, 다수의 시민과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사후보상 중심의 대응보다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br>▪ 또한 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고객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과 점검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br>▪ 더불어,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 민원 발생 유형분석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이용자 만족도와 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3) 외부평가위원 C

### ((1) 평가지표별 점수표

| 구분 |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 평가 방식 | 세부 배점 | 점수 (평가위원) |
|---|---|---|---|---|---|
| 일반 지표 (50) | 1. 사업계획(10)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정성 | 10 | 10.0 |
| | 2. 인력관리(15)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정량 | 3 | 2.5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정량 | 5 | 4.0 |
| | | 2-3. 근태관리 | 정량 | 7 | 5.0 |
| | 3. 공익적 운영(15) | 3-1. 환원사업 실시 | 정량 | 5 | 5.0 |
| | | 3-2. 지역주민 고용 | 정량 | 3 | 1.0 |
| | | 3-3. 지역업체 선정 | 정성 | 3 | 2.0 |
| | | 3-4. 가격안정 기여도 | 정성 | 4 | 3.0 |
| | 4. 성과관리(10) | 4-1. 성과관리체계 | 정성 | 10 | 6.0 |
| 특성 지표 (50) | 5. 운영실적(30) | 5-1. 유통센터 매출액 | 정량 | 5 | 5.0 |
|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정량 | 8 | 4.0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정량 | 5 | 5.0 |
| | | 5-4. 품질관리 실적 | 정량 | 7 | 6.5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정량 | 5 | 5.0 |
| | 6. 시설관리(20)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정량 | 10 | 10.0 |
| | | 6-2. 유지보수 실적 | 정량 | 5 | 5.0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정성 | 5 | 4.0 |
| 합계 | | | | | 83 |

### (2) 평가항목별 의견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일반 지표 | 1. 사업계획 | 우수한 점 | ▪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구현"이라는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중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음<br>▪ 고양시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환원사업 및 협력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 | | 미흡한 점 | ▪ 다만, 추진 목표에서 "매출액 2,700억 원, 손익 60억 원 달성 추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4가지 중점 추진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달성 전략이 제시되지 않음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2. 인력관리 | 우수한 점 | ▪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br>▪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전문성은 73.5%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br>▪ 직원들의 근태관리 체계가 잘 구축·운영되고 있음 |
| | | 미흡한 점 | ▪ 다만, 기간제 계약직이 전체 인력의 65.9%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br>▪ 근태상황관리부에 출장 내역을 기재하고 있으나, 별도의 출장복명서는 제시되지 않음 |
| | 3. 공익적 운영 | 우수한 점 |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동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의서」 제18조에 따라 당해 연도 매출액의 0.3%를 지역환원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br>▪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이용업체 선정 시 다수의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음<br>▪ 2026년 기준 연간 25회의 통합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출하 경로 다양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 미흡한 점 | ▪ 다만, 2025년 지역주민 고용율은 58.6%로 2024년의 73.6% 대비 15.0%p 감소하였음<br>▪ 그러나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br>▪ 2025년 통합판촉행사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시되지 않음 |
| | 4. 성과관리 | 우수한 점 | ▪ 매년 2회(설, 추석) 팀별 특판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팀에 대해 시상함 |
| | | 미흡한 점 | ▪ 다만,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정성적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음 |
| 특성 지표 | 5. 운영실적 | 우수한 점 | ▪ 2024년과 2025년의 유동센터 매출액은 평균 2,600억 원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음<br>▪ 2024년과 2025년의 농산물 취급 비율도 평균 매우 우수한 수준임<br>▪ 전체 농산물 대비 관내 농산물 취급 비율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3% 증가하였음<br>▪ 품질관리를 전문업체(세스코)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 시설 운영 능력도 높은 수준임<br>▪ 매출액의 0.5%를 이용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모두 납부일을 준수하였음 |
| | | 미흡한 점 | ▪ 다만, 2025년 매출액은 2024년 대비 약 176억 원 감소하였음<br>▪ 유통센터 매출액 대비 농산물 도매 매출액 비율은 평균 22.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 | 6. 시설관리 | 우수한 점 | ▪ 2024년과 2025년 모두 법정의무시설점검과 법정의무안전교육을 100% 이행하였음<br>▪ 2024년과 2025년 유통센터 시설 유지보수는 평균적으로 계획 대비 99% 이상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유지보수에 평균 12억 원을 지출하였음 |
| | | 미흡한 점 | ▪ 다만, 2025년 유지보수 집행 금액은 2024년 대비 약 50% 감소하였음<br>▪ 민원 발생 및 처리 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음 |

## 4) 외부평가위원 D

### (1) 평가지표별 점수표

| 구분 |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 평가 방식 | 세부 배점 | 점수 (평가위원) |
|---|---|---|---|---|---|
| 일반 지표 (50) | 1. 사업계획(10)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정성 | 10 | 8 |
| | 2. 인력관리(15)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정량 | 3 | 1.5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정량 | 5 | 3 |
| | | 2-3. 근태관리 | 정량 | 7 | 6 |
| | 3. 공익적 운영(15) | 3-1. 환원사업 실시 | 정량 | 5 | 5 |
| | | 3-2. 지역주민 고용 | 정량 | 3 | 1 |
| | | 3-3. 지역업체 선정 | 정성 | 3 | 3 |
| | | 3-4. 가격안정 기여도 | 정성 | 4 | 3 |
| | 4. 성과관리(10) | 4-1. 성과관리체계 | 정성 | 10 | 6 |
| 특성 지표 (50) | 5. 운영실적(30) | 5-1. 유통센터 매출액 | 정량 | 5 | 5 |
|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정량 | 8 | 4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정량 | 5 | 5 |
| | | 5-4. 품질관리 실적 | 정량 | 7 | 4.5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정량 | 5 | 5 |
| | 6. 시설관리(20)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정량 | 10 | 9 |
| | | 6-2. 유지보수 실적 | 정량 | 5 | 4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정성 | 5 | 2 |
| 합계 | | | | | 75 |

### (2) 평가항목별 의견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일반 지표 | 1. 사업계획 | 우수한 점 | ▪ 사업목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통센터 구현이라는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하는 세부사업들 간의 연계성이 우수함. 더불어 사업추진 방식도 합리적임 |
| | | 미흡한 점 | ▪ 다만, '24년 사업계획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신뢰받은 유통센터"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통센터 구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전략목표와 사업간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br>▪ 또한, '26년 사업계획은 '25년 사업계획이라 작성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음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2. 인력관리 | 우수한 점 | ▪ [인력 효율성 제고] 기관은 '26년 1월기준 정규직 31명, 무기계약직 50명, 영업지원직 155명으로 총 239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이 충분함. 1.5점 부여<br>▪ [담당인력의 전문성] 기관은 34명의 정규직 중 자격증 소지자 및 2년이상 근무자 22명으로 64.7%로 3점 부여<br>▪ [근태관리] 기관은 「복무규정」,「전결기준 준칙」을 두고 직원휴가기준, 내부결제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또한 외출직원 근무상황부를 적절하게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외근무명령, 사무분장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6점 부여 |
| | | 미흡한 점 | ▪ [인력 효율성 제고] 기관은 '25년까지 식자재도매를 별도의 사업부로 운영하였으나, '26년에는 사업지원팀내에 식자재도매반으로 이관하여 운영하여 지원기능과 사업기능 간에 업무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며, 식자제도매반이 대외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또한 '26년 1월기준 정규직 31명, 무기계약직 50명, 영업지원직 155명으로 총 239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운영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24년 1월기준 정규직 40명, 무기계약직 51명, 영업지원직 172명으로 총 236명으로 운영하는 등 정규직인력은 '24년 대비 22.5%, 전체인력은 9.1% 감축 운영하고 있어, 명확한 문제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br>▪ [근태관리] 적정한 근태관리에도 불구하고, 출장복명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병원진료를 외출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3. 공익적 운영 | 우수한 점 | ▪ [환원사업 실시] 기관은 '24년 당기순이익 약 48.4억, '25년 약 27.8억 중 약 30%인 '24년 14.5억, '25년 8.3억, 2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지역환원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지역환원사업을 실시하였음<br>▪ [지역주민 고용] 기관은 '25년 1월 기준 영업지원직 173명 중 고양시민을 134명 고용하여 77.46%, '26년 1월 기준 영업지원직 155명 중 고양시민을 95명 고용하여 61.29%, 평균 69.37%로 1점 부여<br>▪ [지역업체 선정] 기관은 '24년 12건 11개 업체, '25년 8건 8개 업체를 지역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업체 우선 선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됨<br>▪ [가격안전기여도] 기관은 '24~25년 수요장터, 화끈한 장터 등 매주 초특가행사 개최하였으며, 사업계획 내 "지역 물가안정 및 차별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26년에는 초특가행사를 통합전단행사, 요일별 장터행사를 통하여 매달 2주간 할인행사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
| | | 미흡한 점 | ▪ [환원사업 실시] 다만, 협약서 제18조(지역사회발전) 조항에서 "당해 연도 매출액의 0.3%와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라는 협약사항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br>▪ [가격안전기여도] 다만, 실적 증빙이 '26년 계획만을 보고하여 평가하기 어려움 |
| | 4. 성과관리 | 우수한 점 | ▪ [자체 성과 계획 수립 여부] 기관은 년도별 추진계획 수립시 전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있음<br>▪ [사업구조개선 환류 여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전년도 실적을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 | 분석하고 있어 대략적으로 사업구조개선 환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 | | 미흡한 점 | ▪ [자체평가 실시 여부] 기관은 년도별 추진계획 수립시 전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판 결과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실적보고와 성과에 대한 표창 등에 불과한 상황<br>▪ [사업구조개선 환류 여부] 다만, 사업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시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음. 향후, 적어도 반기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특성 지표 | 5. 운영실적 | 우수한 점 | ▪ [유통센터 매출액] 기관은 '24년 약 2,691억, '25년 약 2,515억, 2년 평균 2,603억의 매출액 실적을 달성하여 5점 부여<br>▪ [농산물 취급 비율] '24년 55.2%, '25년 56.4%로 평균 55.8%을 달성 4점 부여<br>▪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23년→'24년 증가율 13.2%, '25년→'25년 증가율 -8.7%로 2년 평균 증가율 2.3%을 달성 5점 부여<br>▪ [품질 관리 실적]<br>▪ (전문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을 근거로 검수/품질관리 담당인력 4명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검사 경력 2년 이상을 확인할 수 없음. 다만,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면 1명으로 25%로 1점 부여<br>▪ (안전성 검사 건수) 잔류농약검사, 식품연구소 수거검사, 세스코 위탁 점검, 산가측정 등 안전검검사를 '24년 2,032건, '25년 2,112건을 수행 2년 평균 2,072건을 수행하여 1.5점 부여<br>▪ (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시설 보유) 품질관리실(식품안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멸균기 등 다양한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2점 부여<br>▪ [이용료 납부실적] 이용료 고지일자와 납부지연일수를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매출액의 0.5%의 이용료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5점 부여 |
| | | 미흡한 점 | ▪ [도매사업 비중] '24년 21.3%, '25년 20.7%로 '24~'25년 평균 유통센터매출액 중 농산물 도매 매출액은 평균 21.0%에 불과하여 향후 도배사업 비중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음<br>▪ [품질 관리실적] 품질관리 전문인력 운영과 자격증 소유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br>▪ [이용료 납부실적] 이용료 고지일자와 납부지연일수를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매출액의 0.5%의 이용료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5점 부여 |
| | 6. 시설관리 | 우수한 점 | ▪ [법정의무점검 실적]<br>▪ (법정점검준수율) 기관은 연차별로 연 1회 필수점검 건수를 달성하고 있으나, '24년에 실시하여야 할 대기 측정은 '25년 1월에 실시하여 1점 감점하여 4점 부여<br>▪ (법정의무교육준수율) 기관은 법정의무교육을 100% 달성하고 있어 5점 획득<br>▪ [유지보수 실적]<br>▪ (시설유지보수) 기관은 비품·물품 구매를 제외하고 '24년 6건, '25년 13건의 시설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음. 다만. 계획이 계획금액만 제시되고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비중을 산정할 수 없어 1점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 | 감점하여 2점 부여<br>▪ (유지보수 금액) 기관은 비품·물품 구매액을 포함하여 '24년 약 8.2억, '25년 약 16.9억2년, 2년 평균 약 12.6억원을 유지보수에 사용하여 2점 부여<br>▪ 기관은 유통센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2부여 |
| | | 미흡한 점 | ▪ [유지보수 실적] 시설유지보수를 필요시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br>▪ [유통센터 사고관리] 다만, 안전사고 현황이라든가 민원대응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여 평가가 어려움. 향후 적극적인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실적, 민원 대응의 실적을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5) 외부평가위원 E

### (1) 평가지표별 점수표

| 구분 |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 평가 방식 | 세부 배점 | 점수 (평가위원) |
|---|---|---|---|---|---|
| 일반 지표 (50) | 1. 사업계획(10)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정성 | 10 | 8 |
| | 2. 인력관리(15)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정량 | 3 | 2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정량 | 5 | 4 |
| | | 2-3. 근태관리 | 정량 | 7 | 6 |
| | 3. 공익적 운영(15) | 3-1. 환원사업 실시 | 정량 | 5 | 5 |
| | | 3-2. 지역주민 고용 | 정량 | 3 | 1 |
| | | 3-3. 지역업체 선정 | 정성 | 3 | 3 |
| | | 3-4. 가격안정 기여도 | 정성 | 4 | 3 |
| | 4. 성과관리(10) | 4-1. 성과관리체계 | 정성 | 10 | 7 |
| 특성 지표 (50) | 5. 운영실적(30) | 5-1. 유통센터 매출액 | 정량 | 5 | 5 |
|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정량 | 8 | 4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정량 | 5 | 5 |
| | | 5-4. 품질관리 실적 | 정량 | 7 | 6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정량 | 5 | 5 |
| | 6. 시설관리(20)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정량 | 10 | 10 |
| | | 6-2. 유지보수 실적 | 정량 | 5 | 5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정성 | 5 | 4 |
| 합계 | | | | | 83 |

### (2) 평가항목별 의견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일반 지표 | 1. 사업계획 | 우수한 점 | ▪ 명확성 : 연도별로 ◦ 추진목표 ◦ 매출목표 ◦ 중점추진과제 ◦세부 실행사업 구조로 구성, 이해하기 편하며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학교급식 공급 확대,” “안전관리 강화,” “고객 마케팅 강화” 등 핵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대상·주기·효과까지 포함하여 실행 방안을 구체화함<br>▪ 연계성 : 지역농산물은 로컬푸드 → 학교급식 확대 → 도매 확대, 고객전략은 할인행사 → 디지털마케팅 → 체험형 소비, 공공성은 지역환원 → 지역협력 → 지역상생, 안전관리는 시설관리 → 재난대응 → 식품안전 체계화까지 각 년도의 정책 흐름이 유지됨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 | ▪ 적정성 : ①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 ② 시민 물가안정, ③ 학교급식 지원, ④ 지역경제 기여 등 기관의 목적과 부합하며, 할인행사 저마진 정책, 지역 환원, 로컬푸드 등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현형을 가지고 있음<br>▪ 합리성 : 소비위축 → 할인 행사 확대, 고객 감소 → 타겟 마케팅 강화, 노후시설 → 안전점검 강화 등 문제해결 전략을 잘 나타나고 있고 신품 안전관리 주기 설정, 지역환원 적립금 운영 등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기하고 있음 |
| | | 미흡한 점 | ▪ 명확성 : KPI와 성과지표가 충분히 구체화 되지 않음(방문객 증가율, 온라인 매출 비중 등 목표치가 일부만 제시됨. 특히 2026년 계획에서는 “공간력”, “Liquid 유통센터”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나 개념 정의와 측정 방식이 불명확함<br>▪ 연계성 : “식자재 사업 감소가 지속되는 데 구조적 개선 전략은 모호”하며 전체 매출은 감소하는 데 연도별 사업은 반복되고 온라인 유통·소비패턴에 대한 장기적 대응 전략은 제한적임<br>▪ 적정성 : 2026년도 플리마켓, 인플루언서 상품 등은 핵심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사업 축소 상황에도 매출 목표를 상향하는 등 현실성 검토가 필요<br>▪ 합리성 : 2025년 실적에서 순이익의 35.8% 감소가 되었음에도 구조 개선보다는 마케팅 중심의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음.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함 |
| | 2. 인력관리 | 우수한 점 | ▪ 편재의 적정성 : 신선/가공/도매 기능을 분리하여 책임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도매 기능을 별도 운영해 공공성과 B2B 기능을 고려한 점은 적절하며 최소한의 지원조직을 운용하고 있음<br>▪ 인력 규모 : 계약직 포함 총 229명에 연매출 2,500~2,700억 원으로 규모면에서는 적정함<br>▪ 업무 분장 : 농·수·축산·가공 등 기능별 역할은 명확하며 경매사 등 자격 보유자가 상당수 존재하여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음<br>▪ 인력의 전문성 : 사업지원팀 · 식자재도매반 · 신선식품사업팀 등에 경매사 물류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유통 관련 자격 보유자가 다수 배치됨<br>▪ 근퇴 관리 : 전산시스템에 의해 양호하게 관리 |
| | | 미흡한 점 | ▪ 편재의 적정성 :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편재로 온라인사업 전담 부서. 물류·SCM 기능, 데이터·CRM 조직 부재하며 특히 식자재 도매반은 도매 + 물류 + 영업 + 마케팅 + POS 운영” 혼재로 기능 집중도가 낮음.<br>▪ 인력 규모 : 계약직이 200명 이상으로 비정규직 중심의 운영이 전문성·책임성 약화가 우려되며 실무 대비 기획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부서 위주 인력 배치로 전략·혁신·데이터·온라인 기능은 취약함<br>▪ 업무 분장 : 기획 마케팅 담당자수 부족 및 세무회계, 시설·전산 등에 개인단위 업무가 집중되어 특정 인력에 대한 업무 의존도가 높아 이직 등에 조직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br>▪ 인력의 전문성 : IT·데이터분석, 디지털 물류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세무·전략기획·성과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br>▪ 근퇴관리 : 출장명령 기준 존재하나 복명 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함 |
| | 3. 공익적 운영 | 우수한 점 | ▪ 위수탁 협력서 제18조 기준충족 고양업체 우선선정 조항에 비추어 계약서류 범위에서는 고양 지역업체 우선 선정 원칙이 100% 충실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 | 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총 21건 중)<br>▪ 물가안정과 출하다양성을 위한 행사가 지속적이며 대상 품목도 다양하며 채소류 30%, 쌀 10% 할인 구조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총 26회 운영 계획으로 기술되어 있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 가격 완충 장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큼 |
| | | 미흡한 점 | ▪ "우선 선정"의 절차적 적정성까지 확정하려면 전체 계약 대장, 견적 비교자료, 타지역 업체 선정 예외 사유서 유무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음(조건 충족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br>▪ 물가안정 기여도를 판촉 행사로 가름하기는 어려움, 평상시 가격 책정과 다른 대형마트하고의 비교가 필요 |
| | 4. 성과관리 | 우수한 점 | ▪ ·추석 특판 평가자료에서 목표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성장률, 매출이익, 품목별 증감, 우수부문 시상까지 확인되어 자체평가와 기본적인 환류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br>▪ 자체평가의 기준이 매출액·성장률 등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분기 실적 추진을 독려하는 등 결과 공유 체계를 가지고 있음 |
| | | 미흡한 점 | ▪ 개선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br>▪ 부진 원인 분석, 후속 조치 이행점검 등 후속 점검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 |
| 특성 지표 | 5. 운영실적 | 우수한 점 | ▪ 직원 299명에 매출액 2,600억 원 수준으로 준수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산물 매출 비중 및 도매 비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br>▪ 제품 관리 측면에서도 잔류농약 463성분, 납, 카드뮴, 총아플라톡신 등 다양한 항목별 검사자와 담당자가 기재되는 전문적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br>▪ '24년도에는 검사 건수가 2,034건이었으나 '25년도에는 2,112건으로 증가하는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 장비 역시 인큐베이터 2대, 항온수조, 항온조·건조기, AUTO CLAVE, 분광광도계, 전기식 지시저울 등 총 7종의 기기가 제시되는 등 자체검사 기반을 갖추고 있음 |
| | | 미흡한 점 | ▪ 지표 선정 및 기준이 억지스러운 점이 있음 : 예 ① 매출액 평가 만점이 2,600억 원 이상 등 지표 기준이 인위적이며, ② 농산물 매출액 비중 50% 및 도매사업 비중 60% 만점이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고 ③ 관내 농산물 출하 증가율이 '25년도 -8.7%이면 만점이 될 수 없음에도 2개년도 합산 평균을 2%로 정하여 만점이 되게 하는 등.<br>▪ 보고서 작성 성의 부족 : 다수 기술이 반복적이고 전년도 도표를 그대로 사용함 (예: '24년 사업계획과 '25년 사업계획 추진목표가 2,690억 원으로 같음. 보고서 8쪽)<br>▪ 전문인력배치여부에서 식품연구소 수거검사, 잔류농약검사, 세스코 위탁점검 등 담당자·검사자 운영은 확인되나 자격·경력 자료는 부족함 |
| | 6. 시설관리 | 우수한 점 | ▪ 시설물 법정점검과 의무교육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음 : 대기, 가스, 실내 공기질, 저수조, 소방, 전기, 건축물 점검 등 다양하게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음<br>▪ 시설 유지보수는 계획 대비 높은집행률로 추진되었고, 주요 노후·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 반영되고 있음.<br>▪ 유지보수비 집행금액도 계획금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대부분 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은 인정됨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
| | |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부터 현금도난보험에 이르기까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보상 대비는 갖춰져 있음 |
| | | 미흡한 점 | ▪ '25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에서는 안전등급 B로 확인되고,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결함사항 및 진행성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누수, 균열, 마감재, 철물 부식 등은 보수 및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어,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 완료 증빙까지 확인 필요<br>▪ 2025년 교육자료에서 상반기 일부 미수료자 4명이 확인되고, 2025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수·보강 및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사항이 제시되어 있어, "완전 이행"보다는 양호하나 사후관리 보완 필요<br>▪ 유지보수의 단가 적정성까지 평가하려면 계약금액 산출근거, 비교견적, 입찰·수의계약 사유, 준공검사 결과 등이 향후 제시되었으면 함<br>▪ 안전사고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접수 → 조사 → 조치 → 보상 → 재발방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는지는 확인이 제한이어서 추후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함 |

# 제3절 평가결과 종합

## 1. 성과지표별 평가결과 종합

□ ㈜농협하나로유통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83.1점

○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외부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지표의 배점을 종합하면, 성과평가 점수는 83.1점으로 확인되었음

**표 3-4 |** ㈜농협하나로유통의 성과평가 종합결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외부평가위원 점수 | | | | | 종합결과 | |
|---|---|---|---|---|---|---|---|---|---|
| | | | A | B | C | D | E | 전체평균 | 절사평균* |
| 일반지표(50) | 1. 사업계획(10)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6.0 | 10.0 | 10.0 | 8.0 | 8.0 | 8.4 | 8.0 |
| | 2. 인력관리(15)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2.0 | 3.0 | 2.5 | 1.5 | 2.0 | 2.2 | 2.2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4.0 | 4.0 | 4.0 | 3.0 | 4.0 | 3.8 | 4.0 |
| | | 2.3. 근태관리 | 7.0 | 7.0 | 5.0 | 6.0 | 6.0 | 6.2 | 6.0 |
| | 3. 공익적 운영(15) | 3.1. 환원사업 실시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 3.2. 지역주민 고용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 3.3. 지역업체 선정 | 3.0 | 3.0 | 2.0 | 3.0 | 3.0 | 2.8 | 2.7 |
| | | 3.4. 가격안정기여도 | 4.0 | 4.0 | 3.0 | 3.0 | 3.0 | 3.4 | 3.3 |
| | 4. 성과관리(10) | 4.1. 성과관리체계 | 6.0 | 6.0 | 6.0 | 6.0 | 7.0 | 6.2 | 6.3 |
| 특성지표(50) | 5. 운영실적(30) | 5.1. 유통센터 매출액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 5.4. 품질 관리 실적 | 6.5 | 6.5 | 6.5 | 4.5 | 6.0 | 6.0 | 6.3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6. 시설관리(20)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10.0 | 10.0 | 10.0 | 9.0 | 10.0 | 9.8 | 10.0 |
| | | 6.2. 유지보수 실적 | 5.0 | 5.0 | 5.0 | 4.0 | 5.0 | 4.8 | 5.0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5.0 | 3.0 | 4.0 | 2.0 | 4.0 | 3.6 | 4.3 |
| 합계 | | | 83.5 | 86.5 | 83.0 | 75.0 | 83.0 | 82.2 | 83.1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개선방안

□ 체계적·종합적 성과관리 구축과 효과적인 사업전략 수립 필요

○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수탁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서 외부평가위원의 공통적인 지적은 성과관리 및 사업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임**

- 이에 ㈜농협하나로유통은 운영실적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전략-실행과제 간의 논리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해심 사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 거래처 다변화, 산지 직거래 확대, 관내 농산물 취급 비중 지속 확대 등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표 3-5 |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영 개선방안**

| 구분 | | 개선방안 |
|---|---|---|
| 외부 평가 위원 | A | ▪ 사업계획 수립 지표, 성과관리 지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유통센터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관련 내용(개선필용사항)은 해당 평가지표별 평가의견에 명시되어 있으며, 차기년도 실적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를 권고함<br>▪ 정량지표 중, 농산물 도매 매출액 비율 지표가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실적 지표로 확인됨. 이에 대한 유통센터의 전략적 접근과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 | B |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고객 중심 경영과 지역사회 연계·기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br>▪ 다만,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도 확인되었음<br>▪ 매출 중심의 성과관리 외에 공공성, 고객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br>▪ 지역 농산물 유통 확대와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상생형 공공형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와 안전 및 민원 대응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관리 및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C | ▪ 첫째, 사업계획의 실행력 제고가 필요함. 수탁기관은 매출액 2,700억 원, 손익 60억 원 달성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4가지 중점 추진계획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연계되어 있지 않음.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목표-전략-실행과제 간의 논리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각 추진계획별로 기여 가능한 매출 및 손익 규모를 산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br>▪ 둘째, 공익적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 주민 고용률이 2024년 73.6%에서 2025년 58.6%로 15.0%p 급감한 점은 기관의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임. 지역 고용 확대를 위한 채용 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역 인력풀과의 연계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용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므로, 객관적 평가지표에 기반한 업체 선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br>▪ 셋째, 성과관리 체계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 현재 팀별 특판 실적 평가가 정량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 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기능이 미흡함.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환류되는 PDCA(Plan-Do- |

| 구분 | | 개선방안 |
|---|---|---|
| | | Check-Act)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br>▪ 넷째, 유통센터의 본연적 기능인 농산물 도매 기능 강화가 요구됨. 유통센터 매출액 대비 농산물 도매 매출액 비율이 평균 22.7%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76억 원 감소한 점은 핵심 사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시사함. 농산물 도매 거래처 다변화, 산지 직거래 확대, 관내 농산물 취급 비중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유통센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br>▪ 다섯째, 시설관리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보완해야 함. 법정의무점검 이행률이 100%로 우수한 반면, 2025년 유지보수 집행 금액이 2024년 대비 약 50% 감소한 점은 시설 노후화 대응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함. 중장기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원 발생 및 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br>▪ 종합적으로, 본 위탁사업은 안정적 운영 기반 위에서 양호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있는 달성을 위해서는 인력 구조의 안정화, 공익적 운영의 실질적 강화, 성과관리 체계의 질적 고도화, 핵심 사업 기능의 경쟁력 제고 등 다각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 | D | ▪ 사업계획 수립시 전략목표와 세부사업계획 및 내용 간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br>▪ 인력효율성 제고 식자재 도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지원기능과 사업기능간 이질적 업무가 단일부서에 배치 및 대외마케팅 업무를 사업기능 내에 배치한 것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인력이 3년 연속 감축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br>▪ 근태관리에서 출장복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진료등 병가와 관련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br>▪ 환원사업에도 협약사항에 “당해연도 매출액의 0.3%과 당기순이익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라는 사항이 명확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안정에 기여 정도도 명확한 실적 제시가 필요함<br>▪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기관은 년도별 추진계획 수립시 전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판 결과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실적보고와 성과에 대한 표창 등에 불과한 상황으로 추진실적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시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여 이를 환류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br>▪ ‘24~’25년 평균 유통센터매출액 중 농산물 도매 매출액은 평균 21.0%에 불과하여 향후 도배사업 비중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 전문인력 운영과 자격증 소유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br>▪ 시설유지보수를 필요시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사고 현황 및 민원대응 리스트를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적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 E | ▪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화 필요 : ‘부’제도에서 팀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4부제/ 추진실적 표(3p,) 작성 부실, 지역농산물 판매 운영실적이 23년과 24년 것이 같음/’24년 추진목표와 ’24년 추진목표가 같은 그림으로 목표액이 같음 등 다수의 오류가 있음<br>▪ 2025년 실적 하락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필요, 특히 식자재·도매 부문 회복전략 별도 수립<br>▪ 2026년 매출 2,700억·손익 60억 목표를 월별·부문별 KPI로 분해하여 목표관리의 실효성 제고<br>▪ 고객수·신규회원·이탈회원 관리대장 구축하여 고객 감소 원인 분석<br>▪ 온라인·마케팅 기능 강화, 도매·물류 기능 재편, 데이터 기반 고객관리 체계 구축, 전략기획 기능 확대, 등 조직 고도화가 필요<br>▪ 2025년 추석 특판처럼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 경우에도 부진 원인, 개선대책, 다음 행사 |

| 구분 | | 개선방안 |
|---|---|---|
| | | 반영 여부가 별도 관리표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음으로 특판 계획서에 반영 여부를 표시하는 성과개선 관리대장을 작성할 필요<br>▪ 지역 기여 및 대파 30% 할인 등 지역 환원 사업의 규모는 충분하니 이제는 투입액 중심의 관리에서 효과지표(예 : 행사전후 판매량 변화 등)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br>▪ 일부 표기사항검사에서 “개선필요”가 확인되고, ATP 위생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므로, 부적합 발생 후 재검사·개선완료 여부를 별도 관리할 필요(예 : 품질검사 결과를 “적합/부적합”으로 끝내지 말고 부적합 조치관리대장을 운영 등)<br>▪ 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 계획 대비 절감이 예산 절감인지, 물량 축소인지, 사양 변경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함으로 고정 투자 집행 내역에 우선순위 산정표 작성을 고려할 필요<br>▪ 법정교육은 교육 완료 여부만 보관하지 말고 미수료자 보완교육 관리표를 운영을 고려할 필요<br>▪ 실제 안전사고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접수, 조사, 처리, 보상, 재발방지까지 적극 대응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안전사고·민원 통합관리대장을 신설할 필요(예 : 처리결과, 재발방지 조치, 민원인 통보일 등 표준화) |

# 제4절 평가이력 관리

## 1. 성과평가 일반현황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 성과평가

○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는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함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2020년 1차에 이어 2023년 2차, 2026년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위수탁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후평가 및 외부전문가 평가로 수행되었음
-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12월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분리·위탁이 가능해졌고, 이로인해 2026년 3차 성과평가에서는 한국회훼농업협동조합은 제외하고, ㈜농협하나로유통만을 대상으로 성과평가가 진행되었음

**표 3-6 |** 성과평가 일반현황 비교

| 구 분 | | 위수탁 성과평가 | | |
|---|---|---|---|---|
| | | 2020년 성과평가(1차) | 2023년 성과평가(2차) | 2026년 성과평가(3차) |
| 근거 | 자치법규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
| |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 |
| | 협약서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 사업 대상 | |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 공급방법 | | 민간위탁 | 민간위탁 | 민간위탁 |
| 위탁유형 | | 수익창출형 | 수익창출형 | 수익창출형 |
| 운영주체 | | ㈜농협하나로유통<br>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 | ㈜농협하나로유통<br>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 | ㈜농협하나로유통 |
| 위탁기간 | | 2018.02.09. ~ 2021.02.08 | 2021.02.09. ~ 2024.02.08 | 2024.02.09. ~ 2027.02.08 |
| 성과평가 | 범위 | 2018년 ~ 2020년 | 2021년 ~ 2023년 | 2024년 ~ 2026년 |
| | 대상 | ㈜농협하나로유통 | ㈜농협하나로유통 | ㈜농협하나로유통 |

| 구 분 | | 위수탁 성과평가 | | |
|---|---|---|---|---|
| | | 2020년 성과평가(1차) | 2023년 성과평가(2차) | 2026년 성과평가(3차) |
| | |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 |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 | |
| | 유형 | 서면평가 | 서면평가 | 서면평가 |
| | 방법 | 외부평가 | 외부평가 | 외부평가 |
| | 수행 | 고양시정연구원 | 고양시정연구원 | 고양연구원 |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2. 평가지표 이력 현황

□ 평가항목 중 ‘운영실적’ 배점 조정

○ 수익창출형인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는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으며, 2020년 1차 성과평가 때에는 15개, 2차 성과평가(2023년)와 3차 성과평가(2026년)에는 각각 17개 세부지표로 설정되었음

- 구체적으로 평가항목 중 ‘운영실적’에 있어서 세부 지표의 배점이 일부 조정되었는 바, ‘농산물 취급 비율(5.2)’은 배점이 높아졌고, ‘품질 관리 실적(5.4)’은 배점이 감소하였음

**표 3-7 | 평가지표 현황 비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성과평가(1차) | | 성과평가(2차) | | 성과평가(3차) | |
|---|---|---|---|---|---|---|---|---|
| | | | 채택 | 배점 | 채택 | 배점 | 채택 | 배점 |
| 민간위탁 계약기간 | | | 18.02 ~ 21.02 | | 21.02 ~ 24.02 | | 24.02 ~ 27.02 | |
| 일반 지표 (50) | 1. 사업계획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 | 10.0 | ○ | 10.0 | ○ | 10.0 |
| | 2. 인력관리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 | 3.0 | ○ | 3.0 | ○ | 3.0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 | 5.0 | ○ | 5.0 | ○ | 5.0 |
| | | 2.3. 근태관리 | ○ | 7.0 | ○ | 7.0 | ○ | 7.0 |
| | 3. 공익적 운영 | 3.1. 환원사업 실시 | ○ | 5.0 | ○ | 5.0 | ○ | 5.0 |
| | | 3.2. 지역주민 고용 | ○ | 5.0 | ○ | 3.0 | ○ | 3.0 |
| | | 3.3. 지역업체 선정 | ○ | 5.0 | ○ | 3.0 | ○ | 3.0 |
| | | 3.4. 가격안정기여도 | - | - | ○ | 4.0 | ○ | 4.0 |
| | 4. 성과관리 | 4.1. 성과관리체계 | ○ | 10.0 | ○ | 10.0 | ○ | 10.0 |
| 특성 지표 (50) | 5. 운영실적 | 5.1. 유통센터 매출액 | ○ | 5.0 | ○ | 5.0 | ○ | 5.0 |
|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 | 5.0 | ○ | 5.0 | ○ | 8.0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 | - | ○ | 5.0 | ○ | 5.0 |
| | | 5.4. 품질 관리 실적 | ○ | 10.0 | ○ | 10.0 | ○ | 7.0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성과평가(1차) | | 성과평가(2차) | | 성과평가(3차) | |
|---|---|---|---|---|---|---|---|---|
| | | | 채택 | 배점 | 채택 | 배점 | 채택 | 배점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 | 5.0 | ○ | 5.0 | ○ | 5.0 |
| | 6. 시설관리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 | 10.0 | ○ | 10.0 | ○ | 10.0 |
| | | 6.2. 유지보수 실적 | ○ | 10.0 | ○ | 5.0 | ○ | 5.0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 | 5.0 | ○ | 5.0 | ○ | 5.0 |
| 합계 | | | 15 | 100.0 | 17 | 100.0 | 17 | 100.0 |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3. 성과평가 결과 비교분석

□ 2차 성과평가와 비교하여 '일반지표'와 '특성지표' 모두 감소

○ 먼저, 일반지표에서 '환원사업 실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2차 평가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였는데, '성과관리체계' 지표의 하락(-1.7)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반면, '유통센터 매출액(1.0)'과 '농산물 취급 비율(1.0)'은 2차 평가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지표의 점수가 변동되긴 하였으나, 평가지표별로 2차 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총점에서도 2차 평가 대비 8.9점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표 3-8 | 성과평가 결과 비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결과 (1차) | 평가결과 (2차) | 평가결과 (3차) | 2차 대비 증감 |
|---|---|---|---|---|---|---|
| 일반 지표 (50) | 1. 사업계획 | 1.1.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 8.5 | 9.0 | 8.0 | -1.0 |
| | 2. 인력관리 | 2.1. 인력 효율성 제고 | 2.75 | 2.5 | 2.2 | -0.3 |
| | |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 5.0 | 5.0 | 4.0 | -1.0 |
| | | 2.3. 근태관리 | 7.0 | 7.0 | 6.0 | -1.0 |
| | 3. 공익적 운영 | 3.1. 환원사업 실시 | 5.0 | 5.0 | 5.0 | 0.0 |
| | | 3.2. 지역주민 고용 | 5.0 | 2.0 | 1.0 | -1.0 |
| | | 3.3. 지역업체 선정 | 4.5 | 3.0 | 2.7 | -0.3 |
| | | 3.4. 가격안정기여도 | 8.0 | 4.0 | 3.3 | -0.7 |
| | 4. 성과관리 | 4.1. 성과관리체계 | 3.0 | 8.0 | 6.3 | -1.7 |
| 특성 지표 | 5. 운영실적 | 5.1. 유통센터 매출액 | 5.0 | 4.0 | 5.0 | 1.0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결과 (1차) | 평가결과 (2차) | 평가결과 (3차) | 2차 대비 증감 |
|---|---|---|---|---|---|---|
| (50) | | 5.2. 농산물 취급 비율 | 2.0 | 3.0 | 4.0 | 1.0 |
| | | 5.3. 관내 농산물 취급실적 | 3.0 | 5.0 | 5.0 | 0.0 |
| | | 5.4. 품질 관리 실적 | 3.0 | 10.0 | 6.3 | -3.7 |
| | | 5.5. 이용료 납부 실적 | 5.0 | 5.0 | 5.0 | 0.0 |
| | 6. 시설관리 | 6.1. 법정의무점검 실적 | 5.0 | 10.0 | 10.0 | 0.0 |
| | | 6.2. 유지보수 실적 | 10.0 | 5.0 | 5.0 | 0.0 |
| | | 6.3. 유통센터 사고관리 | 5.0 | 4.5 | 4.3 | -0.2 |
| 합계 | | | 91.75 | 92.0 | 83.1 | -8.9 |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의 성과평가 결과는 제외하고, ㈜농협하나로유통 평가결과만 비교
〈자료〉 고양연구원 작성

□ 향후 사업계획의 구체화, 담당인력 전문성 확보,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 평가결과의 비교분석을 종합하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사업계획 수립시 구체성과 명확성을 고려해야 하며, 업무 중심의 인력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 더불어 적극적인 지역주민 고용, 농산물의 시장가격 안정화 사업 수행, 효과적인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제4장 성과평가 개선방안

# 제4장 성과평가 개선방안

□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수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 결과는 재계약 적합성 판단에 활용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익성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 일반적으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평가지표가 활용되고 있으나, 위탁사무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가 필요함

-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인권, 고객만족 등을 세부지표로 추가하여 공익성을 확보해야 함

□ 둘째, 성과평가 이력관리를 통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2001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 이후 수탁업체의 변경이 없었던 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쟁업체가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평가지표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성과평가 이력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때, 평가결과가 낮아진 지표별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효과적인 이력관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임

□ 셋째, 민간위탁 계약시 협약서에 성과목표와 평가체계 적시 필요

○ 2024년 2월 고양특례시와 ㈜농협하나로유통 간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운영실적은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함(협약서 제6조)

-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수탁기간 만료 전에 평가를 실시토록 적시되어 있음(협약서 제15조)
- 그러나 협약서에는 성과목표와 평가계획 수립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 성과목표와 평가항목 및 지표 등을 협의·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위·수탁기간 동안 수탁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위탁사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시 또는 협약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 필요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독립성, 성과평가 이력관리의 효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현행 고양특례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근거하며, 동조항 제2조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바, 해당 조문을 '고양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국내문헌]**

이정철·전성훈(2021). “고양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김형성(2020).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유통 위탁 성과평가.”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김재형(2023).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고양시정연구원

**[기타자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025년 사업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지방자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Abstract

##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of Goyang City in 2026

Sunghun Jeon[1], Jaihyumg Kim[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o continue the consignment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ivate consignment agency that manages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 Distribution Center(AFDC)' in Goyang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First, Although there should be a resolution by the 'Selection Committee' based on Article 8 of the 「Goyang City Private Consignment Ordinance」,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confirmed that 'Nonghyup Hanaro Mart(NH)' meet the contract renewal requirements.

Second, the key to performance management is the feedback, which clearly reflects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n the next plan. The feedback is tha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it involves not only reducing or expanding the project but also changing the method and organization.

Third, considering the public value of the AFDC,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peration' among the evaluation items. Through this, the private consignment agency may be motivated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in Goyang City.

Finall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n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1)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2)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현안 26-01

**2026년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 |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1일 |
| **저 자** | 전성훈,김재형 |
| **발 행 인** | 김남준 |
| **발 행 처** | 고양연구원 |
| **주 소** | 104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존 9층 |
| **전 화** | 031-8073-8341 |
| **홈 페 이 지** | www.goyang.re.kr |
| **S N S** | https://www.facebook.com/goyangre/ |
| **I S B N** | 979-11-24069-25-7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KoPubWorld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2026년 고양특례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of Goyang City in 2026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